

的汉中门外广东公墓和二道埂子一带。

曾目击汉中门外大屠杀惨状的警察陈永清，在1945年11月2日提供的证词说：民国26年（1937年）12月15日，日军中岛部队在南京难民区境内的司法院查出军民以及警察等人合计2000余人，用轻机枪12挺将一介人等押送汉中门里，每行列用绳捆绕圈住，赶至城外，用机枪对其扫射，已死者及伤者都被该日军用木柴汽油焚烧之。

伍长德是南京同仁街菜场退休工人，日军占领南京时，他29岁。1937年12月15日下午5点多钟，他被带到汉中门外的秦淮河边屠杀时，纵身扑到在乱尸堆上，后边的人接二连三地倒在他的身上——机枪停止扫射后，日本兵在尸堆上刺杀尚未断气的人，刀尖穿透他背上那个人的尸体，扎在他的身上，背上留下有一条5寸长的刺刀疤痕。1947年7月，伍长德曾作为证人出席东京远东国际军事法庭。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建成后，他又多次来馆里向国内外观众讲述他的这一悲惨经历，控诉日军的残暴。

再比如：草鞋峡大屠杀

侵华日军在南京的集体屠杀，以在草鞋峡屠杀的人数最多，总数达到57400多人。

草鞋峡位于南京城北长江边的幕府山下。1937年12月14日，日军第13师团山田支队到达幕府山下，其第65联队窜至长江边，即将逃到城外四郊的成批难民以及放下武器的中国士兵（其中有大批的伤病士兵）均被拘禁在幕府山下。12月18日，日军将这些难民和被俘士兵57400多人，赶到草鞋峡用机枪扫射后，又用刺刀乱戳，最后浇上汽油焚烧，残余骸骨被投到长江中。

泯灭人性的零散屠杀

侵华日军除展开有计划大规模集体屠杀外，还在南京城里进行了凶残的泯灭人性的零散屠杀。

1937年12月13日，侵华日军第六师团长谷寿夫率领所部首陷中华门，中岛、牛岛、末松等师团也相继攻入城内，他们立即分路扑向城内各区，沿途对我无辜市民和放下武器的士兵展开屠杀。

南京的雨花台中华门及市内各地至今还有一些当时身受其害的幸存者。秦淮河物资回收站的退休工人朱锡生老人当时避难到下浮桥福音堂中，被日军抓到秦淮河边，一个日军从背后用刀砍他的后颈，他昏在地上——直到现在，朱老汉的后颈上还留有三、四寸长的疤痕。

现住中山门外竹林新村的夏淑琴老妈妈，每当回忆起当年的屠杀惨景仍痛不欲生。她说：“日本人进城时，我们一个大门里住着两户人家，一共13口人。在短短的十几分钟里，邻居家4口人和我家7口人都被日本人杀死了，才1岁多的小妹妹也未能幸免于难。我和一个3岁的妹妹侥幸活下来，妹妹当时就吓呆了，我脊背被刺了两刀，左臂被戳了一刀，伤疤现在都还留着。”

一位当时逃出南京的中国士兵，在1938年2月的武汉《大公报》上揭露说：“走在街上，真是难过，路上东一个西一个，都是我们同胞的尸体，我不敢多看，偏又不由自主的偷看，哪里还能看得清楚！都是一堆血肉棉衣在一起模糊着”。

更有甚者，日军纵火烧屋，迫使居民外跑，或诱骗其他居民出来救火，日军就乘机

杀害。住在南京石榴新村的左涌得老人和孙庆有两位老人控诉说：“晚上，日军在丰富路卫生所放火，火势很大。附近的居民都纷纷赶去救火，不料救火的人刚刚跑到跟前，早埋伏在隔壁军营的日本兵大批翻墙而出，端着刺刀就向救火的人乱戳，捅死后就扔到火堆里，有的还被日军活活的推到火坑里烧死”。孙有庆老人在这次救火中，被日军在头部、背部、颈部、腿部和臀部等处共被戳了8刀，至今身上还留下疤痕。

这期间，日军用刀刺杀、砍杀以及用锥刺全身和眼睛，唆使军犬撕咬，用人作活靶等等，杀人兽行举不胜举，南京人民遭受了史无前例的血腥屠杀。

凶狠残暴的杀人竞赛、杀人祭马

日军在攻战南京前，素以残杀中国人著称的日军第16师团中岛部队里有两个少尉军官向井敏明和野田毅，彼此相约作“杀人竞赛”取乐，决定在占领南京时，谁先杀满100人，谁就是胜者。他们从句容杀到汤山，向井敏明杀了80人，野田毅杀了78人，因都未杀满100人，“竞赛”继续进行。12月10日中午，两个杀人魔王相遇在紫金山下，两人手中都拿着砍缺口的军刀。野田毅说：“我杀了105人，你呢？”向井敏明说：“我杀了106人”。于是两人大笑不已。可是，确定不了谁先杀满了100人。因此，他们决定这次比赛不分胜负，重新再赌谁先杀满150个中国人。12月11日，比赛又在进行。

面对这种惨无人道的野蛮行为，日军的随军记者铃木、浅海、充本等人都作为“消息”向国内发了专电，大肆宣扬要保持这种“武士道精神”。东京的《日日新闻》以“百人斩大接战”、“百人斩超记录”的标题给予刊载，并刊登了向井野田这两个杀人魔鬼的照片，就在向井、野田疯狂进行“杀人竞赛”的同时，在南京的西南郊一带，隶属于第6师团四十五联队的大尉中队长田中军吉，手持“助广”军刀，连杀俘虏和非战斗人员300余名，又成为东京报纸颂扬的另一个“英雄”。

日军还举行了“杀人祭马”。

日军的两匹军马，栓在当地的居民郭光贵家的屋角，被流弹打死，日军硬逼着街上的方斗斗、熊顺尧、邓银苟、高来生等老人，把马抬进郭光贵后院，逼他们挖坑埋马。在此同时，他们又从附近的居民家中抢来几床棉被，抓来了木匠宋士波，迫令宋士波做两块有门头，一尺宽的木牌位。用日文写上什么军马之墓。

随后，日军用刺刀逼令宋士波、方斗斗等九人，用棉被把马包裹好，放进已经垫了棉被的土坑里，培上土，插上牌位，像安葬什么达官贵人一样，做了两个大马坑。善良的宋士波、高来生等老人们满以为没有事可以走了，岂知杀人成性的日本侵略军，惨无人道地把九位老人的头砍了下来，一字儿排在马坟前，用以祭马。

日本侵略军竟然杀了九名中国无辜的百姓来祭他们的两匹死马，可见他们哪里还有一点人性。就连战争罪犯松井石根也不得不假惺惺的表白：日军“士兵之暴行，使皇威一扫而光。”

正义的历史审判

1946年4月29日，设在日本东京的远东国际军事法庭对东条英机等28名甲级战犯正式提出起诉，并开始审判。

法庭受理证据 4336 件，证人证词 1194 件，审判历时二年零六个月。这样大规模的国际性审判，在世界上是空前的。

法庭以确凿的证据证明，日本甲级战犯犯有破坏和平罪、战争罪及违反人道罪。25 名日本甲级战犯判处有罪。其中东条英机、松井石根等 7 人被判绞刑。

法庭判定：“在日军占领南京后最初六个星期中，南京及其附近被屠杀的平民和俘虏总数达 20 万人以上，这个数字还没有将被日军焚烧的尸体，“投入到长江或其他方式处理的尸体计算在内。”同时，法庭还确认了日军在南京大肆进行的奸淫、抢劫、焚烧的罪行。

1946 年 2 月 15 日，南京“国防部审判战争罪犯军事法庭”成立。在南京市 12 个区公所贴出公告，号召南京人民搜集揭发侵华日军南京大屠杀的材料。仅中华门雨花台第 11 区公所里，提供的证据材料证实谷寿夫部队凶残的屠杀罪行就达 459 起。法庭的人员获取了大屠杀期间南京的慈善机关掩埋我遇难同胞尸体数字的原始记录，并由中国红十字会负责人，以及当年掩埋尸体的人员陪同到中山码头、草鞋峡等大屠杀的现场，搜集到大量的证据。在雨花台周围挖掘出六处万人坑，遍地都是白骨，触目惊心，法医在每件骨片上都验出被锐器砍杀的伤痕。

法庭确认，在南京大屠杀期间，“计我被俘军民，在中华门、花神庙-----下关草鞋峡等处，惨遭集体杀戮及焚尸灭迹者，达 19 万人以上。在中华门下码头-----等处，被零散残杀，尸体经慈善团体掩埋者，达 15 万人。被害总数共 30 万余人。”另外，日军的强奸、焚烧、抢劫等种种罪行也得到认定，翔实的记录在案。

经过审判，战犯谷寿夫、进行“杀人比赛”的向井敏明、野田毅和屠杀南京市民 300 多人的田中军吉等 4 人，被处以死刑，并枪决于雨花台。

我们在上面用了大量的篇幅例举了大量的事实，目的只是想说明，侵华日军对南京人民和放下武器的俘虏的屠杀，是贯穿于整个侵华战争的全过程，这些血和泪铸成的历史，说明南京大屠杀不过是侵华日军一系列屠杀事件中的一次，但决非仅此事一次，证明了侵华日军公然违反国际公约犯罪的恐怖行径。任何篡改历史，抹杀侵华日军暴行的企图都是痴心妄想。南京大屠杀已经过去了 67 年，而日本政要和军国主义仍然竭力否定南京大屠杀，参拜供奉有南京大屠杀主犯松井石根等甲级战犯的灵位的靖国神社，向正义宣战，挑衅和平。我们南京人民一定会从历史中吸取经验教训，捍卫和平和维护和平。

주제포럼 2 집단학살 문제

발표자 : 은종인(재일)

영상자료

분과토론

각 주제별 향후 연대활동을 위한 제안 및 토론

■ 일본군위안부 토론(진행 | 북한)

[의제] 국제활동 내용

■ 희생자와 유골문제 발표(진행 | 홍상진)

[의제] 군인군속과 강제동원 유골문제 | 발표 9편

■ 강제동원 토론(진행 | 모찌 하시다동)

[의제] 진상규명, 한일협정개정 | 발표 최봉태, 토론 김창록

■ 교과서문제(진행 | 안병우)

[의제] 2005년 교과서재검정 | 발표 이신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분과회의발언문

(제안자 : 홍선옥위원장)

앞서의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범죄 가운데서도 그중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국제기구들에서 전시하에서의 중대녀성인권침해행위로 중요하게론의되어 여러 권고와 결의가 채택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린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녀성국제전법법정》에서 《쇼와천황》의 유죄와 일본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신심과 용기를 주었으며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서 력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일본의 과거청산의 핵심사항으로, 세계여성인권운동의 대표적현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여러 관련단체들, 국제기구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에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운동적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루하였다고 하지만 일본당국의 부정적태도로 실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측면에서는 이렇다할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생의 여유는 이러한 침체와 양보를 더는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자신이 내세운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보다 파감하게 결정적인 활동을 벌려 나가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비인간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보다 광범한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을 미룰수 없는 또 미루어서는 안될 절박한 문제라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주의를 돌리고 각성하도록 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것을 호소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릴것을 제기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하여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되도록 자기의 어지러운 과거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의 비도덕성과 무책임성,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대해 환기시켜 일본당국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높일수 있다고봅니다.

서명운동은 각 단체들이 자기 나라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일본의 폐망 60년을 앞두고 2005년 7월경에 서명문들을 모아가지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대표들이 유엔인권위원회와 일본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기구들에 세계인민들이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노력을 중시하고 기대하고 있다는것을 알리며 또한 국제기구가 자기의 권고와 결의가 무시되고 무용지물로 될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

제사회에서 존중되고 권위있는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촉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일본정부에 피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본군《위안부》행위가 구일본군부의 판여 하에 벌어졌다는에 대해서는 일본당국도 인정한것이며 또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의 권고도 나온 조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면 이길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박영심피해자와 같이 증거와 증인이 충분한 매우 유력한 피해자도 생존해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 단체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려야합니다.

각 정부들이 이를 수락하고 제기하게 되면 일본당국을 둘러싼 강력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당국에 큰 압력으로 될것입니다.

물론 일본정부가 응해 나오겠는가 하는것은 알수 없습니다.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기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것을 요청하며 일본정부가 응해 나올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수 있을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의견으로만 논의되어 왔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정식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국제련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관련단체들사이의 협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대하고 힘을 합쳐 보다 강화된 협력과 전술로서 사방에서 일본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피해자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파거청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고 광범한 국제사회계를 우리의 편으로 만들도록 일본당국이 파거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채 사죄의 말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며 생존해있는 피해자들도 이제 남은 생이나마 마음편히 보낼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가해의 리론을 저버려온 일본, 자민국중심주의의 유골수집사업에 대하여

전 참의원의원, 조선녀성과 현대하는 일본녀성의 회 대표

시미즈 스미코

1.

올해는 일본이 침략전쟁에 패하여 59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전쟁으로 육친을 잃은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어디까지나 유골의 소재를 추적하고 정부에 반환사업을 요구하기를 억누를 길이 없다. 그것이 보통 시민의 심정이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후생로동성은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3년도부터 구일본군인, 군속의 사망자의 유골의 신분조사에 DNA 감정을 채용하여 국비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종래 신분조사의 방법은 매장자료나 유튜품 등을 실마리로 하여 진행되지만 1999년도 이후의 구소련, 몽골, 오끼나와현에서 수집된 유골에 대해서는 사망자 명부부터 관련 유가족이란 것이 추정될 경우에는 유가족이 유골의 반환을 희망한 것을 조건으로 DNA 감정으로 확인하기로 되었다. 이미 후생로동성에는 6,240주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고 새로 신분확인을 희망하는 900주로 대조의 대상으로 되여있다. 금후도 계속 실시 된다.

2.

일본이 광대한 아시아태평양전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감행한 침략전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혹한 전쟁이였으므로 아시아제국에서의 전쟁희생자는 능히 2천만명을 넘으며 그중 일본인의 전몰자는 3백만 명이며 그중 군인, 군속의 전몰자는 2백40만명에 달한다. 또한 유골송환개수는 123만 487명이고 예상되는 잔존유골 갯수는 106만 5130명이라 보고되어 있다. 이 숫자 속에는 구일본군, 군속에 소속되어 있었던 조선반도출신자의 24만 4천명(구후생성자료)속에는 잔상병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가 전몰자의 유골수집을 시작한것은 1951년부터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것은 대일평화조약의 비준이 진행된 1952년에 중의원에서 《해외지역 등에 잔존하는 전몰자유골의 수집 및 송환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서부터이다.

제1차계획은 1953~58년사이에 수집한 유골은 1만 1358주이며 제2차계획의 1967~72년 사이에 8만 2679주이며 제3차계획으로써는 1973~75년에 9만 3628명의 유골이 수집되어 있다. 그 이후는 새로 유골의 소재가 밝혀진 지역 등에서 계속하여 실하기로 되어 있다.

3.

그후 1991년에 구쏘련의 골바쵸브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외동골을 포함한 《구쏘련지역에 련행당한 57만5천명 중 포로수용소에서의 사망자의 묘참과 유골인도의 협정》의 길이 열린 것으로 그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유골수집이 시작하였다(1992년). 2002년에 거의 수집을 끝내고 있다. 그러나 유골의 수집는 예정한 것의 약 3분의 1에 머무르고 집골수도 1만7천체에 머무르고 있으며 금후의 교섭에 달려있다.

이렇듯 유골의 완전한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에 정부는 유가족의 요망에 응하여 이전에 주된 전장이 된 현지에 《위령순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위령배》의 건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골수집과 《위령비사업》에 사용된 나라의 예산은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42억6천만엔에 달한다. 또한 현재 조사단계에서는 1967년부터 2004년까지 후생성 원호국에 있어서의 유골수집사업의 총예산집행액은 153억7천만엔에 달한다.

그 이전을 포함하여 300번 이상에 달하는 수집이 진행되어 있으나 그 관할성은 운수성의 운해훈련소이거나 총리부였으므로 예산의 총액은 장악되지 않고 있다.

4.

그런데 놀랍게도 1944년 6월 조선의 전라남도 홍도 앞바다에서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된 히니시끼마루(5,705톤 륙, 해군군인 약 3,400명)의 도꾸즈미제도 전몰자 유골수집단이 1970년(소화 45)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어 257주를 수집하고 있다.

이듬해 1971년에도 제주도 전몰자유골수집단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파견하여 485명의 전몰자 중 172주를 수집하고 있다. 이 코토부끼마루(2,943톤)등 3척의 선단은 1945년 24월에 상해를 향하여 해군의 군인, 군속의 보충요인과 군수품을 수송 중에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지만 그 조속한 시기에 일본으로서는 가장 가해책임이 큰 조선반도에서 유골의 수집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1945년 8월 4일 조국에 귀국하던 중의 조선인을 태운 우끼시마마루의 침몰에 관해서는 유골의 수집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군중심이며 자국민 중심인 것이다.

또한 그중 한국에 유골이 인도된 것은 1984년까지 8831주라 한다. 또한 1991년 여름에 진행된 《브라운섬옥쇄자》의 유골수집을 함께 있어서는 그 명부의 290명 중에 조선반도출신자가 235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후생성은 유골수집과 현지 《위령》을 일본인에 한하여 한국의 유가족의 동행의 신입을 접수하지 않았다.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유펜지에는 1971년에 2326체가 예탁되어 있었으나 그후

한국에 인수되어 현재는 1086주가 안치되어 있다. 아울러 유펜지에는 우끼시마마루사건의 희생자의 유골 208주와 도쿄재판의 판결에 의해 처형된 BC 급전범 5주가 안치되어 있다.

5.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선반도출신의 군인, 군속은 일본정부가 《해군특별지원병령》(1944년)이나 징병제를 구조선총독부시정하에 시행(1944년)하고 또한 동시에 군속의 징용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명부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반도출신자의 유골도 가능한 껏 수집하여 송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도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자국민중심주의를 관철하고 전장에서 일본인의 군인, 군속과 같은 경우에 있었던 조선반도출신자의 유골수집에서 조차 시종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을 일본의 침략군의 한성원으로 만들어온 식민지정책에로의 반성은커녕 그 피해자의 령까지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반리론적이며 조선반도출신자에 대한 《제2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본정부는 유펜지에 일시적으로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대하여 명부를 조사하고 정부간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우선 유가족에 대한 사망통고를 하여 유골의 반환을 서둘러야 한다. 접수하는 유가족이 없는 경우 한국측의 경우는 《망향의 언덕》에 안치되도록 하고 북반부출신자에 대해서도 일조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속에서 조속히 조국의 고향땅에 돌아가도록 성의껏 혜의를 다하여야 한다. 동시에 후생성은 보관하고 있는 조선반도출신자의 모든 명부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6.

한편 1937년의 일중전쟁 이래 조선의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로동력으로서 탄광이나 광산, 토목건설공사 또는 군수산업의 기업하에서 민족차별과 령악한 로동조건 속에서 혹사당했다. 그 수는 100만~150만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사람수 조차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조선인의 강제연행이 얼마나 무법하고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더구나 강제연행의 피해자들은 사상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임금, 예저금, 년금, 퇴직금, 조위금 등의 미불금의 모든것이 몰수되어 있다.

더우기 가혹한 로동 속에서 비명의 죽음을 한 사람들의 유골의 대다수는 일본각지에 내버려진 상태로 매장되어 비바람을 맞은 채로 되어 있다.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삿보로나 기타 몇군데의 사원이 협력하여 당시의 강제로동으로 사망한 로동자의 유골의 존재가 밝혀져와 있으나 오래동안

방치된 유골은 상처도 많고 《쓰레기》와 같이 하나의 함에 채워진 현황이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조선반도출신자에 대하여 생존중은 물론 죽어서도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린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군마현의 조선반도출신자의 《강제련행희생자의 비를 세우는 회》가 비문에 《강제련행》이라고 기록하자고 한 용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강제련행》이란 용어를 《로무동원》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있다.(2003년)

7.

일본정부는 스스로의 정책에 의하여 실시된 강제로동에 의한 강제로동을 《로무동원》이란 용어와 몰래 바꾸어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 조, 1932년비준) 및 《노예제금지조약》(1926년비준)이나 전쟁범죄인 《하그룩전규칙》(1911년비준) 및 《인도에 대한 죄》의 위반의 모든 것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계기로 하여 전후 50년을 맞이하는 1990년대 이후는 이것들의 국제법상의 일반시민(개인)의 권리나 손해배상을 직접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NGO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개인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법상식을 뒤집는 리론구축이나 새로운 립법 또는 《화해》에 의해 해결하려는 조류가 생기고 있다.

또한 1993년의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강제》에 대한 정부의 개념과 견해를 요구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제를 가할 것만이 아니라 협박하고 또는 공포시켜서 본인의 의사와 반한 어떤 종의 행위를 시키는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의 운동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에 의해 유린되어온 개인의 인권이나 민족차별의 역사적 범죄성을 폭로하고 공권력의 립장에서의 법리론의 해석이나 정책을 인권의 리념으로 바로 세우는 운동은 벌써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다.

8.

그런 의미에서도 특별히 식민지통치와 동서랭전의 기에서 은폐되어 온 조선인 강제련행과 강제로동의 역사적 사실의 조사와 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일본정부와 관계기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운동은 긴급한 과제이다. 동시에 이 피해자들의 유골의 수집과 송환을 위한 인도적인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하게도 한국정부는 1965년의 일한화약 체결후 《대일민간청구견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1971년)하고 한국에 지불된 《무상 3 억딸라(당시 일본엔 1,080 억엔)으로 1945년 8월 15일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

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권(예금, 유가증권 등)과 군인, 군속, 로무자로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문제점은 《일본군종군위안부》로 당한 사람들은 물론 8월 15일 이후의 사망자들(BC 급전범으로 당한 사람, 군인, 군속, 강제로동시의 흑사가 원인으로 귀국한 후에 사망한 사람들 등등)이 대상으로 되지 않고 있으며 도저히 피해보상에 맞먹지 않은 내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군인, 군속의 유골수집에 대하여 어째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책임적으로 조사발굴과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던지 의문을 금치 못한다.

9.

그러나 되돌아서면 일본의 전쟁범죄를 판결한 궁동군사재판에 있어서 류룬베르크재판과 달리 연합군의 정치적 판단에서 《인도에 대한 죄》가 추구, 심판되지 않았던 데에 관계하는 것이다.

《인도에 대한 죄》란 《전재의 온갖 일반주민에 대하여 범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강제이송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리유에 기초한 박해》라고 상정하고 있다. 당초 미국의 기소장초안에서는 이 《인도에 대한 죄》가 설정되어 그것이 감행된 지역으로서 중국, 구만주, 조선 등이 가리켜지고 있었으나 그 후 과정에서 《조선》은 탈락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도쿄재판의 소추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제외되고 면책이 되여 조선인강제련행이나 《종군위안부》문제나 일본정부가 저지른 학살행위나 성노예행위 등이 《인도에 대한 죄》로서 추궁되지 않고 끝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자기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제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역사상의 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본과 남북조선의 시민과 민중의 현대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加害の論理を欠いてきた日本・ 自国民中心主義の遺骨収集事業について

代表清水澄子
前参議院議員・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女性の会

1. 今年は日本が侵略戦争に敗れて五十九年目を迎える。だが、日本の社会においても戦争で肉親を失った遺族たちは、どこまでも遺骨の所在を追い続け、政府に返還事業を求めてやまない。それが普通の市民の心情というべきであろう。

現在、日本の厚生労働省は遺族の強い要求により、2003年度から旧日本軍人、軍属の死亡者の遺骨の身元調査にDNA鑑定を採用し国費で実施することになった。従来の身元調査の方法は埋葬資料や遺留品等を手掛かりとして行われていたが、1999年度以降の旧ソ連、モンゴル、沖縄県で収集された遺骨については、死亡者名簿から関連遺族であることが推定できる場合には、遺族が遺骨の返還を希望していることを条件にDNA鑑定で確認を行うことになった。すでに厚生労働省には6,240柱の遺骨が保管されており、新たに身元鑑定を希望する900柱分が照合の対象になっている。今後も引き続き実施される。

2. 日本が広大なアジア太平洋全域に及ぶ地域で行った侵略戦争は、長年にわたり過酷な戦いであったため、アジア諸国での戦争犠牲者は優に二千万人を越え、そのうち日本人の戦没者は三百十万人で、うち軍人・軍属の戦没者数は二百四十万人にのぼる。また、遺骨送還概数は百二十三万四百八十七人で、予想される残存遺骨概数は百十六万五千百三十人と報告されている、これらの数字の中には旧日本軍人・軍属に所属していた朝鮮半島出身者の二十四万四千人(旧厚生省資料)の中の戦傷病死者が含まれているはずである。

日本政府が戦没者の遺骨収集を始めたのは1951年からである。だが本格的な取り組みは対日平和条約の批准が行われた1952年に、衆議院において「海外地域等に残存する戦没者遺骨の収集及び送還等に関する決議」が採択され、アメリカ政府の承認を得てからである。

第一次計画は1953～58年で収集した遺骨は一万千三百五十八柱で、第二次計画の1967～72年で八万二千六百七十九柱と第三次計画では1973～75年に

九万参千六百二十八人の遺骨が収集されている。それ以後は新たに遺骨の所在が明らかになった地域などで継続して実施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3. その後、1991年に旧ソ連のゴルバチョフ大統領が来日した際に外モンゴルを含む「旧ソ連地域に連行された五十七万五千名のうち捕虜収容所における死者の墓参と遺骨引き取りの協定」の道が開かれたことから、この地域での本格的な遺骨収集が始まった。(1992年)2002年でほぼ収集を終えている。だが遺骨の収集数は予定の約三分の一にとどまり、集骨数も一万七千体にとどまっており、今後の交渉にゆだねられている。

このように遺骨の完全な収集は不可能に近い。そのため、政府は遺族の要望に応えて、かつて主戦場となった現地に「慰靈巡拝」を行うと共に「慰靈碑」の建立を行っている。

こうした遺骨収集と「慰靈碑事業」に使われた国の予算は最近五年間のみでも、四十二億六千万円である、なお、現在の調査段階では1967年から2004年までの厚生省援護局における遺骨収集事業の総予算執行額は百五十三億七千万円である。それ以前を含めて、300回以上に及ぶ収集がなされているが、その所轄省は、運輸省の航海訓練所であったり、総理府であつたため、予算の総額はつかみきれていない。

4. ところで驚いたことに1944年6月朝鮮全羅南道紅島沖で潜水艦の攻撃を受けて沈没した日錦丸(5,705トン・海軍軍人約3,400人)の徳積諸島戦没者遺骨収集団が1970年(S45)7月2日から20日まで行われていた二百五十七柱を収集している。

翌1971年にも、濟州島戦没者遺骨集団を10月13日から27日まで派遣し、四百八十五人の戦没者のうち百七十二柱を収集している。この寿山丸(2,943トン)など、三隻の船団は1945年2月に上海に向けて海軍の軍人・軍属の補充要員や軍需品を輸送中に攻撃を受けて沈没したものであるが、この早い時期に日本としては最も加害責任の大きい朝鮮半島で遺骨の収集を行っていたのである。

1945年8月4日、祖国に帰国途上の朝鮮人を乗せた浮島丸の沈没については、遺骨の収集も行われていない。日本はあくまで軍中心であり、自国民中心なのである。

また、このうち韓国に遺骨が引き渡されたのは、1984年までに八千八百三十一柱とされる。また、1991年夏に行われた「ブラウン島玉碎者」の遺骨収集に当たっては、その名簿の二百九十人の中に朝鮮半島出身者が二百三十五柱を占めていたが、

厚生省は遺骨収集と現地「慰靈」を日本人に限り、韓国の遺族の同行の申し入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東京目黒区にある祐天寺には1971年に二千三百二十六体が預託されてたが、その後韓国に引き取られ、現在は千八十六柱が安置されている。因みに、祐天寺には浮島丸事件の犠牲者の遺骨208柱と東京裁判の判決により処刑されたB級戦犯五柱が安置されている。

5. ここで問題は、朝鮮半島出身の軍人・軍属は日本政府が「海軍特別志願兵令」(1944年)や徵兵制を旧朝鮮総督府施政下に施行(1944年)し、また同時に軍属の徴用を行ったのであるから、その名簿は完全に掌握されているはずである。従って、朝鮮半島出身者の遺骨も可能な限り収集し、送還するのが国の責任であり、道義というものであろう。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自国民中心主義を貫き、戦場で日本人の軍人・軍属と同じ境遇にあった朝鮮半島出身者の遺骨収集においてすら差別的な扱いに終始している。このことは、彼らを日本の侵略軍の一員に組み込んで来た植民地政策への反省はおろか、その被害者の靈までも踏みにじっているのである。こうした行為は反倫理的であり、朝鮮半島出身者に対する「第二の罪」を犯していると指摘せざるを得ない。

先ず、日本政府は祐天寺に仮安置されている遺骨について名簿を調査し、政府間で身元を確認すると共に、先ず遺族に死亡通告を行い、遺骨の返還を急ぐことである。受け取る遺族のいない場合で韓国側の場合は「望郷の丘」に納めてもらい、北朝鮮出身者についても日朝国交正常化を急ぐ中で速やかに祖国のふる里に戻れるよう誠意をもって礼を尽くすべきである。同時に厚生省は保管している朝鮮半島出身者の全てのリストを公開する責任がある。

6. 一方、1937年の日中戦争以来、朝鮮の人々は日本の侵略戦争のための労働力として炭鉱や鉱山・土木建設工事あるいは軍需産業の企業の下で民族差別と劣悪な労働条件で酷使された。その数は100万~150万人ともいわれている。、このように人数すら定かでないところに、朝鮮人の強制連行が、いかに無法にして無秩序に行われていたかを証明している。しかも、強制連行の被害者たちは死傷者といえども何らの補償も無く賃金、預貯金、年金、退職金、弔慰金などの未払い金のすべてを没収されている。

さらには、過酷な労働の中で非業の死を遂げたこれらの人々の遺骨の殆んどは、日本各地で捨てられるような状態で埋められ風雨に曝されたままとなっている。「強制連

行真相調査団」の活動に札幌や、その他幾つかの寺院が協力して、当時の強制労働で死亡した労働者の遺骨の存在が明るみに出てきているが、長年放置されていた遺骨は損傷多く、「ごみ」のように一つの箱に詰められている現状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政府は朝鮮半島出身者に対し生存中は勿論、死してなを人間としての尊厳を蹂躪している。そればかりか、群馬県の朝鮮半島出身者の「強制連行犠牲者の碑を建てる会」が碑文に「強制連行」と記録しようとした用語に対して、日本政府は「強制連行」という用語を「労務動員」と改めるよう指示している。(2003年)

7. 日本政府は自らの政策により実施された強制連行による強制労働を「労務動員」という用語にすりかえ、国際法で禁止されている「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ILO第29条・1932年批准)及び「奴隸制禁止条約」(1926年批准)や戦争犯罪である「ハーグ陸戦規則」(1911年批准)ならびに「人道に対する罪」の違反の全てから責任を回避している。

しかし、すでに日本においても「日本軍慰安婦」問題を契機にして戦後五十年を迎える。

1990年代以後は、これらの国際法上の一般市民(個人)の権利や損害賠償を直接に、あるいは他の国に対して請求する権利行使するNGO活動が活発化し、「個人が国際法上の主体になることは出来ない」という従来の法常識を覆す理論構築や、新たな立法ないしは「和解」により解決しようとする潮流が生まれている。最近の中国人強制連行裁判での判決では、時効や一事不再理、国家無答責などの従来の法概念を超えて、原告の主張に共感する判例が出されている。

また、1993年の参議院予算委員会において「強制」に対する政府の概念と見解を求めた私の質問に対して、政府は「単に物理的に強制を加えることのみならず、脅し、あるいは恐怖させて、本人の意思に反するある種の行為をさせたことである」と答弁した。

このように、市民の運動によって国家の政策により蹂躪されてきた個人の人権や民族差別の歴史的犯罪性を暴露し、公権力の立場からの法理念の解釈や、政策を人権の理念で正す運動は最早押し止めることの出来ない一つの流れとなっている。

8. そうした意味においても、とりわけ植民地統治と東西冷戦の基で隠蔽されてきた朝鮮人強制連行と強制労働の歴史的事実の調査と、その被害者ならびに遺族に対する謝罪と償いを日本政府と関係企業に対して要求する運動は緊急の課題である。同時に、これら被害者の遺骨の収集と送還のための人道的な手立て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강제연행 군인·군속희생자의 유골문제

홍상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사무국장

しかし、残念なことに韓国政府は1965年の日韓条約の締結後「対日民間請求権申告に関する法律を制定(1971年)し、韓国に支払われた「無償三億ドル(当事の日本円1,080億円)で1945年8月15日以前に日本国及び日本国民(法人を含む)に対して所有していた請求権(預金・有価証券など)と軍人・軍属あるいは労務者として召集または徴用され、1945年8月15日以前に死亡した者」については補償済みとしましたことである。だが、この法律の問題点は「日本軍従軍慰安婦」にされた人々は勿論のこと、8月15日以後の死亡者など(BC級戦犯にされた人、軍人・軍属、強制労働時の酷使が原因で帰国後に死亡した人たち等々)が対象となっておらず、到底、被害補償に値しない内容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旧軍人・軍属の遺骨収集に対して、なぜ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責任をもって調査発掘と送還を求めなかつたのか疑問を禁じえない。

9. しかし、元を正せば日本の戦争犯罪を裁いた極東軍事裁判において、ニューヨーク裁判と異なり、連合軍の政治的判断から中国人強制連行の花岡事件を除き「人道に対する罪」が追求、審判されたなかったこと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

「人道に対する罪」とは「戦争のあらゆる一般住民に対して犯された殺人、殲滅、奴隸化、強制移送、および、その他の非人道的行為もしくは政治的、人種的、宗教的理由に基づく迫害」であると想定している。当初、米国の起訴状草案では、この「人道に対する罪」が設定され、それが行われた地域として、中国、旧満州、朝鮮などが示されていたが、その後の過程で「朝鮮」は脱落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ため、東京裁判の訴追から日本の植民地支配は除外され免責となり朝鮮人強制連行などや「従軍慰安婦」問題など、日本政府が行った虐待行為や性奴隸行為等が「人道に対する罪」として追及されずに終わったのである。また日本は自から、その責任を果たすための法制定を実施していない。したがって、この歴史上の犯罪を糾明し被害者の人権と名誉を回復できるのは、私たち日本と南北朝鮮の市民と民衆の連帯行動によってのみ可能であることをここに改めて確認したいと思う。

조선인강제연행에는 구일본군인·군속문제도 포함된다. 이미 1994년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노예제작업부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단이 제기하였다. 부회에서는 이동현태인 조선인강제 연행에는 구일본군인·군속이 포함되어 군속의 로동실태는 강제로동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현재 조선반도 북남의 피해자와 유각족이 바라며 그 누구도 거절못하는 초보적인 인도상의 문제인 구일본군인·군속희생자의 유골문제를 해방후의 피해국과 가해국 그리고 미점령군의 일련의 대응을 일본외무성의 최근 자료부터 분석하였다.

【새롭게 확인한 일본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일본외무성 제16회 외교기록공개(2000년 12월 20일)에 의한 《태평양전쟁 종결에 의한 구일본국적인의 보호 인양관계 조선인 관계 유골송환관계》 책자에 포함되어 있었다(자료2 이 외는 모두 이 자료에 포함되었다). ※부분은 필자의 설명이며 그 외는 원문번역이다.

① 1947년 7월 3일 《조선, 대만, 千島、樺太、南洋諸島、小笠原諸島 등 현행정권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있는자의 복원유수업무에 있어서의 통달》(복원청, 1복 제1231호)

(요지)

- 유가족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일본인과 같이 처리한다.
- 이외는 제명부를 정비하는것만으로 하며 사망공보는 발행하지 않다.
- 평화조약발표후는 자주적립장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의 유골수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국내의 조선과 대만인유골을 미송환으로 방지하는것은 인도상, 비난당할수도 있기에 (이하생략)

【자료 1】 1948년 5월 17일 SCAPIN5660-A 【자료 2】 1949년 5월 12일 APO500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PO 500		CIVIL / SUPPLY GUARDIAN APO 500 7 JUN 1948 REF ID: A91 (12 May 48) CPW/NW	
AB 468 (12 May 48) 00 SCAPIN 5660-A		MEMORANDUM FOR: JAPANESE GOVERNMENT. SUBJECT: Shipment of Funeral Urns and Personal Belongings of Deceased Koreans to Korea.	
Reference is made to the following: a. Central Liaison and Coordinating Office letter number 1558 (PCR number 38) 1 May 1948 subject as above. b. Memorandum,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B 468 (20 Dec 47) AII, for the Japanese Government SCAPIN 5036-A, dated 20 December 1947, subject as above.		1. The Ministry of Finance is directed to investigate and report in detail on the funds held in Japan as of 15 September 1945 in the following account: a. Korean nationals employed in Korea by the Korean Government General b. Korean nationals employed in Japan by the Japanese Government c. Korean nationals in the Japanese army d. Korean nationals conscripted for other services and/or labor. 2. Report will give detailed accounting of these earmarked funds, Ministry of Disposition thereof, and present balance and location thereof. 3.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Reference 1b, a copy of the roster prepa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Reference 1b will be forwarded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t least ten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for shipment.	
FOR THE SUPREME COMMANDER:		R. G. MILLER, Jr Colonel, Infantry Deputy Quartermaster	

② 【자료 1】 GHQ부터 일본정부에게 1948년 5월 17일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과 개인소유물을 조선에 수송할데 대하여》 (요지)

제 2 복원사무국은 강제적으로 일본군등에 귀속되어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과 개인소유물을 조선의 가족으로 보낼것이다.

③ 【자료 2】 1949년 5월 12일 GHQ 민간재산관리부 각서 한국에서에 청구 일본정부앞

(요지) 한국국내, 일본국내에서 고용된 조선사람, 일본군에 소속한 조선사람, 기타 징용 조선사람의 1945년 9월 15일이후 일본국내에 류보된 자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세한 보고를 제출하라.

④ [秘] 1949년 8월 4일 《조선출신 전몰자에 관한 권》 외무성아시아국 제5과

(요지) 인양원호국장부터 조선출신군인·군속전몰자의 명부제시, 유골송환을 추진하면 어떤가고 외무성의 의향을 문의 하였는바 제5과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와 관련한 위령금, 매장료의 지불문제도 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회답한 경위가 있다.

별지

1 복관계 조선출신자 사물자 및 보간유골수 (생략) ※ 1 복이란 육군, 2 복이라 해군

2 복관계 조선출신자 사물자수 및 유골전달수 ※ 아래 【자료 3】

二種類別總算表	
計	軍人
一	二
二	三
三	四
四	五
五	六
六	七
七	八
八	九
九	十
十	十一
十一	十二
十二	十三
十三	十四
十四	十五
十五	十六
十六	十七
十七	十八
十八	十九
十九	二十
二十	二十一
二十一	二十二
二十二	二十三
二十三	二十四
二十四	二十五
二十五	二十六
二十六	二十七
二十七	二十八
二十八	二十九
二十九	三十
三十	三十一
三十一	三十二
三十二	三十三
三十三	三十四
三十四	三十五
三十五	三十六
三十六	三十七
三十七	三十八
三十八	三十九
三十九	四十
四十	四十一
四十一	四十二
四十二	四十三
四十三	四十四
四十四	四十五
四十五	四十六
四十六	四十七
四十七	四十八
四十八	四十九
四十九	五十
五十	五十一
五十一	五十二
五十二	五十三
五十三	五十四
五十四	五十五
五十五	五十六
五十六	五十七
五十七	五十八
五十八	五十九
五十九	六十
六十	六十一
六十一	六十二
六十二	六十三
六十三	六十四
六十四	六十五
六十五	六十六
六十六	六十七
六十七	六十八
六十八	六十九
六十九	七十
七十	七十一
七十一	七十二
七十二	七十三
七十三	七十四
七十四	七十五
七十五	七十六
七十六	七十七
七十七	七十八
七十八	七十九
七十九	八十
八十	八十一
八十一	八十二
八十二	八十三
八十三	八十四
八十四	八十五
八十五	八十六
八十六	八十七
八十七	八十八
八十八	八十九
八十九	九十
九十	九十一
九十一	九十二
九十二	九十三
九十三	九十四
九十四	九十五
九十五	九十六
九十六	九十七
九十七	九十八
九十八	九十九
九十九	一百

⑤ 조선군인·군속의 미지불금

공탁인원수 약 1 1 만명

* 공탁금액 약 1조 5 0 0 0 만엔 (일본돈, 물가슬라이드환상)

【자료 4】 생략 ※ 지면관계상 2 2 일의 희생자분과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한다.

⑥ 1960년 2월 5일 내부문서 《조선출신 군인분속의 유골 반항에 관한 권》 외무성 북동아세아과 작성

조선출신군인·군속의 유골로 후생성이 관리하는것이 현재 약 2 3 0 0 주 있는데 그 대부분분의 출신지가 알기에 그 일람표를 1955년 6월에 한국대표부에 제출하여 인수를 요청했는데 그대로 되여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유골인수와 상제비로 1인당 5 7 0 0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북조선인 지불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방침이다.

【자료 5】



1. 조선출신 군인, 군속 전몰자의 유골(유발, 유조등을 포함)에 대해

조선출신 군인, 군속의 수는 약 24만명이었으나, 그 중에서 전몰한 사람의 수는 2만2천명이다. 그 중 약2천6백주의 유골이 종전까지 그 유족(남북선)에게 인도해지고 있다. 또 종전 후 한국 정부기관(제1차는 1948년 2월3일 남조선과도정부 외무소 부산 련락사무소, 제2차는 1948년 6월 1일 부산에서 림시 정부 일본과장)에 약7천2백주의 유골(남선분)을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한 유골은 약9천8백주로 되고 있다.

오늘 아직 그 유골이 일본정부에 보관된수는 약2천3백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선	북선	계
구류군	1 1 1 2	3 4 5	1 4 5 7
구해군	6 9 4	1 2 3	8 1 7
계	1 8 0 6	4 6 8	2 2 7 4

후생성으로서는 이러한 유골이 가능한 조기에 유족에게 인도를 할수있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주) 전몰자약 2만2천명과 우의 계인도귀골및 보관유골의 합계수와의 차수에 대해서는 유골을 얻지못한 것이다.

2. 종전 후 련합군 사령부를 거쳐 약7천2백주를 조선에 인도한 경위에 대해

1947년 2월 26일부의 련합군 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전몰 조선 군인 군속의 유골 유품 가운데, 그 유족이 남선(38도선 이남)에 거주하는 분만을 조선에 보내게 되였으므로, 1948년 2월 3일 사세보 출항의 「호꼬다마르」 및 동년 5월 31일 출항의 「오곤마르」로 함께 7천2백여주의 유골을 남선에 보내, 이것을 앞에서 본 정부기관에 인도해, 각각 령수증을 받고 있다. 그 인도 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편에서는 계속해 제3회이후의 송환을 실시하고 싶은 생각이였지만, 련합군사령부로부터 이것을 중지하도록 지시받았다.

3. 유골 명부에 대해

유골 명부(실제로 정부가 그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조선 출신 군인 군속 전몰자의 명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조선에 송부하여 그 해당 유족의 존부 및 그 현주소의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1956년 5월 23일 외무성에 의뢰하고 있다.

4. 북조선계 단체의 움직임 (생략)

경기도에서 일본군에 련행되어 사망한 군인·군속피해자의 통계와 그 분석

김 철 수

일본·조선대학교 교원,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사무국 차장

일제는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민을 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강제련행해갔다.¹ 조선과 일본국내에서 련행한 총수는 36 만명(일본정부의 공식발표)을 헤아린다. 그러나 그 총수가 정확하게 얼마이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숨지어갔는가, 그들의 유골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등 그 실태는 여전히 정확히 파악못하고있다. 그 주된 원인은 일본정부가 자기들이 저질은 가해행위를 음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에서는 일본정부가 남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아 1971년에 넘긴 《피징용사망자련명부》로부터 경기도분을 분석하여 조선인 군인·군속피해자의 실태에 접근해보자고 한다.

1. 《피징용사망자련명부》에 대하여

이 명부에는 육군 8430명, 해군 13280명 합계 21710명분²의 조선인 군인·군속사망자가 등재되어있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①계급, ②이름, ③생년월일, ④소속부대명, ⑤사망년월일, ⑥사망장소, ⑦사망구분, ⑧사망사유, ⑨본적지(군·면·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자의 련락처로서 ⑩친권자와의 관계, ⑪이름, ⑫주소가 밝혀지고있다.

각 지방의 희생자수를 많은 순서로 올린다면 전남 4153명, 경남 2858명, 전북 2826명, 경북 2776명, 경기 1782명, 충남 1622명, 충북 1163명, 황해 1180, 강원 962명, 평북 753명, 평남 603명, 함남 592명, 함북 440명이다.

물론 이 수자가 군인, 군속희생자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수자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1948년에 후생성 제2복원국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에서는 군인·군속사망자총수를 16340명이라 하고있으며 1962년에 후생성 원호국이 《한일회담》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22182명, 야스꾸니진자에 소위 《합사》되어있다는 조선인희생자는 21181명이다. 《피징용사망자련명부》도 이 수자들에 가까운 수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일관하게 내고있는 22000명전후한 희생자수는 틀림없이 실제

보다도 적은 수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 수에는 옥쇄지(玉碎地)나 수송선의 침몰, 패전전후에 쏘련군과의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 만주국병사로 된 조선인희생자, 오끼나와전투에서의 군속희생자, 일본국내의 군사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군속으로 된 사람들의 속의 희생자, 일본내 혹은 조선내에서 공습, 사고, 병사한 사람들의 수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있다.³

2. 경기도출신의 희생자에 대하여

경기도출신의 사망자 1782명의 내역은 육군희생자 940명(군인 557명, 군속 376명, 불명 7명)⁴, 해군희생자 841명(군인 18명, 군속 823명)으로 되여있다.

희생자의 본적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성부 308명, 수원군 139명, 광주군 101명, 안성군 94명, 려주군 93명, 리천군 91명, 강화군 88명, 인천부 87명, 통인군 83명, 포천군 73명, 양주군 65명, 양평군 60명, 연천군 59명, 고양군 58명, 평택군 58명, 개성부 56명, 부천군 52명, 개풍군 47명, 장단군 45명, 김포군 31명, 시흥군 29명, 가평군 27명, 파주군 26명, 불명 9명(당시 행정구역에 따름)이다.

우선 육군소속의 희생자로부터 보기로 하겠다.

먼저 사망지를 보면 희생자가 100명을 넘는 지역은 필리핀의 260명(루손 123명, 레이테 60명, 민다나오 54명, 기타)을 필두로 하여 중국 205명(호남성 61명, 호북성 36명, 광서성 33명, 광동성 15명, 기타), 뉴기니아에서 112명의 희생자를 내고있으며 이 3 지역으로 전체 희생자의 61.4%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팔라우, 막마, 태만, 일본, 조선, 찌시마, 싱가폴, 마리아나제도, 타이, 보르네오, 세레베스, 스마또라, 자와, 비아크, 솔로몬제도, 비스마르크제도등 일본이 전쟁을 확산시킨 거의 대부분 지역에 련행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있다.

희생자를 많이 낸 배속부대는 특별건설근무대 101중대(108명), 제3선박수송사령부(63명), 보병 78련대(60명), 보병 77련대(32명), 보병 73련대(28명), 독립혼성 12련대(26명), 보병 75련대(24명), 보병 100련대(21명), 야포병 26련대(21명) 들이다.

가장 희생자가 많은 특별건설근무대 101중대는 군공사에 동원된 고인(雇員), 용인(傭人)의 로동자부대이며 희생된 주된 지역은 중국 호남성(48명), 호북성(27명), 광서성(30명)이다. 호남성희생자중 27명은 44년 7월 10일 전투에서 희생되고 있으며 그중 25명은 수원군 출신이였다. 호북성희생자중 22명은 해방을 맞이한 후에 말라리아, 적리(赤痢)로 병사하고있다.

제3선박수송사령부는 전원이 군속이며 팔라우에 련행되어 영양실조로 각기(脚氣)에 걸리거나 적리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있다.

보병 78련대는 뉴기니아와 수송중 태만근해에서, 보병 73,75련대는 필리핀·루손도에서, 보병 77련대는 필리핀·민다나오도 등에서, 보병 100련대는 막마에서, 야포병 26련대는 뉴기니아에서, 독립혼성 12련대는 필리핀·레이테도에서 희생되고있다.

³ 橋口雄一 200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総和社, 125 페지

⁴ 명부에는 941명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 등재된 수는 940명이다.

¹ 日本弁護士連合会는 2002년 10월에 낸 〈조선인강제련행·강제로동〉 인권구제제기사건의 조사보고서에서 강제련행개념에는 《군인, 군속, 女性정신대, 위안부로서의 전시동원의 전체를 포함하여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지적하고있다.

² 《피징용사망자련명부》에는 원래 21,919명분의 군인·군속이 등재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자가 소유하는 명부는 21,710명분이다.

사망자는 련합군이 역공세로 넘어가 전투가 치렬해지는 1944년 중순으로부터 급증하고 있다. 44년 1월부터 6월 사이는 63명의 사망자였으나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망자는 237명에 달하였다. 45년 이후는 1월 82명, 2월 29명, 3월 44명, 4월 58명, 5월 60명, 6월 77명, 7월 104명, 8월은 일본 패망까지 36명이 희생되어 이 해 사망자수는 육군총사망자수의 절반을 넘는다. 놓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중의 후과로 말미암아 이역땅에서 병사한 수가 9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명부에는 1939년 이전의 육군군속사망자 명단도 있다. 36년부터 38년까지 통역을 하던 3명이 중국에서 사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군소속의 희생자를 보기로 하자.

희생자가 가장 집중된 지역은 마샬제도 216명 (퀘제린 176명, 루온트 39명, 브라운 1명)이며 이어서 카로린제도 164명 (페루류 69명, 트락크 58명, 메레옹 29명, 팔라우 5명), 일본 110명 (그중 71명이 일본 근해 해상), 마리아나제도 81명 (그중 63명이 마리아나 제도 근해 해상), 필리핀 77명 (루손도 34명, 카가얀제도 26명, 민다나오도 10명, 기타)이다. 이외에 뉴기니아, 비스마르크제도, 피로켓트, 기르바트제도, 비아크, 나우르, 보르네오, 싱가폴, 불령인도시나, 조선, 태만, 찌시마에서 희생자가 나와 있다.

배속부대를 보면 제4시설부소속이 389명으로서 희생자의 반수가 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30건축부에서 53명, 오미나토시설부에서 45명의 희생자가 나와 있다.

제4시설부는 퀘제린 (173명), 트락크 (51명), 루온트 (37명), 메레옹 (28명), 마리아나 제도 근해 (57명)에서의 희생자가 많다. 마샬제도의 퀘제린과 루온트에서의 희생자는 거의 대부분이 44년 2월 6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있다 (204명). 한편 카로린 제도의 트락크와 메레옹에서는 대부분이 영양실조, 그로인한 충심각기 (衝心脚氣)로 희생되고 있다 (68명). 마리아나 제도 근해에서 희생자의 사망 날자는 43년 5월 10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53명) 이는 수송 중에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다.

제30건축부의 희생자는 페루류에서 그 대부분이 사망 (51명)하고 있으며 그 중 44년 9월 15일에 희생자가 집중하고 있다.

오미나토시설부의 희생자는 우끼시마마루사건 관계가 20명, 북찌시마에서 12명, 북태평양에서 8명 확인할 수 있다.

해군사망자는 육군이 전쟁 말기에 많은 희생자를 낸 것과는 달리 벌써 43년부터 희생자를 많이 내고 있다. 희생자가 집중된 것은 43년 5월 (57명), 44년 2월 (219명), 44년 9월 (90명), 45년 6월 (41명)이며 해군련행자의 반수 이상이 44년에 사망하고 있다. 조선인은 일찍부터 가장 위험한 남방 최전선 지역에 련행되어 기지 건설에 동원되다가 사고나 병으로, 련합군의 진출로 전투에 말려들어가거나 수송선이 공격당하여 희생되었다. 또한 일본 패망 이후에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

희생자들의 사망년령⁵은 어떠했던가.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이는 21살이며 그 수

⁵ 명부에는 사망년령 항목이 없으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로 사망년령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생년월일 혹은 사망년월일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전체의 27.1% (483명)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망년령은 얻지 못했다.

는 167명, 총수의 12.9% (불명자를 제외한 비율)을 차지한다. 희생자는 20살부터 24살에 집중되어 있다. 세대별로 본다면 20대의 희생자 수가 960명 (74.1%), 30대가 180명 (13.9%), 10대가 136명 (10.5%), 40대가 19명 (1.6%), 50대 3명 (0.3%)라고 되여 있다. 명부 속에는 14살, 16살 자리의 나머린 희생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강제 련행되다가 일본군의 대포 밥으로 되였으며 전지에서 숨지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수 없이 많다.

3. 문제제기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면서 글을 맺겠다.

첫째로, 일제에 의해 강제 련행된 조선인 군인·군속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다그칠 필요가 있다. 련행자, 희생자의 련행지, 사망지, 피해 상황 등 구체적으로 진상을 밝혀나가야 한다. 본 보고에서 진행한 《피징용 사망자 련명부》 분석은 그 일환이다.

둘째로, 희생자의 유골 조사와 유가족 조사를 시급히 다그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패전한지 6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 군인·군속 희생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유골 수집 활동을 멀리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패전 후 약 9천 추가까운 정부 보유 유골을 남조선 정부와 유가족에게 넘기고 있으면서도 공화국 출신의 유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희생자 명부에 기초하여 희생자의 유골 조사, 유가족 찾기를 다그쳐야 한다. 특히 60년이나 방치되어온 공화국 출신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

중국 해남도 조선인 피학살자 유골 한일공동 발굴조사사업의 의의와 과제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 사건의 배경

- 1939년 2월에 일본 육해군이 기습공격을 하여 중국 해남도를 점령하고 군정을 시행
- 일본의 해남도 점령 목적은 '남방'(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세아니아 북부) 침략을 위한 군사 거점 확보와 자원 약탈
- 1939년 8월에 紀州鑛山을 경영하던 石原(이시하라) 산업은 해남도 남부(현 三亞시 교외)의 田獨광산을 독점하여 이듬 해 7월부터 철광석을 일본의 八幡(야하타)제철소로 보내기 시작
- 田獨광산에서는 해남도 민중뿐만 아니라 上海, 廣州, 厦門, 汕頭등의 중국 본토와 香港, 臺灣, 朝鮮에서 부터 연행된 사람들이 흑사당하였다.
- 三亞시 북방 교외에 '조선촌'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집단학살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政協三亞市委員會編『三亞文史』第4輯(1992年12月), 海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編『海南文史資料』第6輯(1993年1月), 海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編『鐵蹄下的腥風血雨——日軍侵瓊暴行實錄』下(1995年8月))
- 학살된 조선인은 일본 식민지하 조선의 형무소에서부터 '조선보국대'로서 연행된 수형자. (1942년 말부터 일본 해군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선의 형무소 수감자 약 2000~3000명이 해남도로 강제연행.)
- 일본의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조선촌' 학살에 관여한 일본 인의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
- 해남도 현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연행된 조선인들이 도로공사, 터널공사, 비행장 건설, 광산노동(田獨광산, 石碌광산), 항만공사, 철도공사, 군용시설 건설, 발전시설 건설, 병원에서의 세탁과 소독 등 다양
- 위안소가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으며, 일본인, 군부대가 관리. 기주 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의 조사에 의하면 '위안소'에 수용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70~80명('三亞항공대' 제2중대장의 1980년에 발표한 글에서 '동백장'이라는 '위안소'에 조선인 여성 15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기록. 위안부였던 박내순씨는 귀환하지 못한 채 1995년에 병원에서 사망. 김옥주씨는 1946년 음력 9월에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귀국했다고 증언)

- 현지인의 증언을 종합할 때 1945년 여름에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

2. 학살의 양태 (증언을 근거)

1) 한국에서의 증언

- 마포, 경성, 평양, 대구등의 형무소에서 해남도로 송출. 귀국 후 가출록(한국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京城形務所假出獄關係書類(조선총독부 행형부작성)'에는 217명의 명부만 확인)
- 도망자를 불잡아 양손을 묶어 매달아 죽였다.
- 말라리아에 걸려 약이 없어 죽은 동포도 있었다.
- 하루 4~5명씩 죽었고 죽은 사람을 운반하여 모래밭에 묻었다.
- 해방 후에 일본인 간수는 포로수용소에 넣어졌고, 조선인 형무관은 다수가 인민재판으로 죽었다고 한다.
- 해남도로 향한 좌수 수송선이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됐다는 편지를 받았다.
- 조선보국대 1,200~1,300명 정도가 모두 총살되었다고 현지인으로부 들었다고 귀환자의 증언

2) 현지에서의 증언

- 1941년 3월 16일 저녁무렵 일본군이 排田村마을 주민을 한곳으로 집결시켜 불태워 죽였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88명이 희생되었다. 17일에는 白石嶺村에서 40명을, 18일에는 昌文村에서 107명을, 賜第村에서 10명을 살해했다.
- 1942년 3월 1일 石馬村을 습격하여 200여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127명을 사살 또는 불태워 죽였다.
- 1945년 7월 30일 아침 30여명의 일본군이 秀田村을 습격하여 189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140명을 불태워 죽였다.
- 1942년 3월 20일, 일본군이 書田村을 포위 17명의 청년을 연행하여 학살. 청년들을 찾아 나선 가족 20명 이상을 학살.
- 1942년 6월 28일 오전 8시경 일본군 100여명이 大溝村을 습격, 촌민 38명 학살.
- 譚門에서는 '공개처형'이 자행되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대한 주민들을 한번에 11~20명씩 총으로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베어 학살했다. 무덤을 파서 50~60명을 함께 묻었고 무덤안은 사람의 피가 가득했다.
- 公昌村에서는 일본군이 공산당이라 생각되는 주민을 전부 학살했다.
- 1943년 8월 17일 심야, 일본군은 吳村을 포위하여 다음 날 326명을 학살하고 집 215채를 불태웠다.

- 1943년 12월 23일 和合村을 습격하여 353명의 주민을 학살했다.
- 加來비행장건설공사에도 일본군은 도주하다 불들리면 칼로 쳐죽였고, 일하는 인부들도 굴을 파게 하고 정좌시킨 후 목을 베어 전부 학살했다.
- 어렸을 때 많은 조선인이 죽는 것을 보았다.
- 살해된 조선인들의 시신은 東方村에 매장했다. 일본군 사령부 가까이에 위안소가 있었다.
- 조선인 1000명이 광석을 물에 씻는 일을 주로 했다. 조선인은 절반 가까이 죽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 일본군이 조선인을 철조망으로 묶어 나무에 매단 후 두들겨 패죽였다.
- 조선인들이 나무에 매달려 두들겨 맞거나 학살되는 것을 숨어서 여러 번 보았다.
- 조선인의 머리를 베어 상자에 넣어서 마을 입구에 놓았다. 상자가 다 차면 어딘가로 가지고 간 후 새로운 상자에 머리를 넣었다.
- 일본군은 1000명 이상의 조선의 정치범을 三亞시의 수용소에서 학살하고 南丁 북쪽 언덕에 묻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조선촌으로 개명되었다.
- 일본군은 조선동포를 南丁村에 굴을 파 물자를 숨기게 한 후 1000명 가량을 학살하여 땅에 묻었다. 그것이 '南丁千人坑'이다.
- 1974년경 현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南丁千人坑'에 가 보았을 때 백골이 널려 있었다.
- 1945년경 조선인들이 도로건설작업에 동원되어, 작업이 끝나자 일본인들이 때려 죽인 후에 굴을 파 묻게 했다.

3. 한일공동 발굴조사 사업

1) 목적

중국 하이난섬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한일 공동으로 학살자 유골의 법의학적 감정을 통하여 학살의 실태를 규명하고, 전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며,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하기 위함.

2) 발굴조사 계획

1) 발굴조사 일시 :

1차조사 : 2004년 10월 (시험발굴조사)

2차조사 : 2005년 2월 (시험발굴조사)

3차조사 : 2005년 10월 (전면발굴조사)

2) 장소 : 중국 하이난섬 쌉야시 난딩촌 천인갱 일대

3) 발굴진상조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한국),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

국),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일본)

4) 발굴조사 참가자(계속 모집중)

① 한국(현재 4명)

김민철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경희대 겸임교수

김은식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박규병 : 중국 하이난도 피학살자 유족

이윤성 : 서울대 의학대학 법의학 교수

② 일본(현재 10명)

김정미 : 재일 사학자,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사토 쇼진 :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타쓰미 신지씨 : 킨키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 조교수
외 7명

3) 오사카 인권박물관 기획전 (2004년 7월 21일~8월 15일)

해남도와 아시아태평양전쟁 – 점령하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1) 전시개요

- 주최 : 오사카 인권박물관
- 후원 :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 협력단체 : 한국정신대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협력 확정 단체)

2) 전시구성

① 기획전 취지, 종합해설, 연표

② 군사침략 : 학살, 항일투쟁

③ 경제침략 : 토지약탈, 자원약탈, 노동강제

④ [조선촌] 학살

- 천인갱 그곳에는 누가 매장되어 있는가!

유품, 부장품, 군대수첩 등

- 2004년 2월 발굴 현장 기록

- 조선보국대 명부

- 문헌자료 전시

⑤ 해남도에 있었던 일본군대 성노예제

- 사진 판넬 : 박래순씨의 묘, 현지 남아 있는 위안소

- 해남도 위안소 위치도
- 해남도 전시성폭력피해재판 관계 문서 전시

⑥ 침략전범에 시효는 없다!

- 일본국가의 책임
- 일본기업의 책임
- 일본민중의 책임

3) 관련행사

※ 비디오 상영

- 오사카인권박물관,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제작

※ 관련행사

- 증언, 보고와 토론 집회
- 비디오 상영회
- 기획전 도록 전시
- 참고도서, 비디오 전시

4> 국내 순회전시 예정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와 지역의 피해자 단체, 참가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9월 하순경부터 추진할 계획

4. 결론

중국 해남도의 조선인 학살사건은 태평양전쟁 중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다. 학살된 조선인의 수 뿐만 아니라 학살의 양태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살된 사람들의 신원도, 그들이 학살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학살을 지시한 책임자도 그 어느 것 하나 규명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천인갱 일대에 아직도 묻혀져 있을 수 많은 조선인 피학살자의 유골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나 송환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유골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을 통하여 학살의 양태를 규명하고, 정확한 희생자 수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참혹한 실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지난 2월에 일본정부차원에서 보관중인 우천사 유골의 연내 송환을 시작으로 중국 해남도 등 해외에 남아 있는 유골의 연차 송환을 위해 민관합동실태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남도 조선인 피학살자 유골 한일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유골발굴에 대한 절차, 발굴 이후의 유골의 처리문제, 현지 추모시설 건립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일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해남도 조선인 유골문제 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한국정부와 협상중에 있다.

한일공동 발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일본정부와 기업의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며,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골의 발굴, 감정, 송환, 추모사업 등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군인군소재판을 지원하는회로부터의 제안

지원하는회 사무국장 후루카와 마사키

1. 군인군속 편에서 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실상

-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의 군인 군속의 사망자 약 230 만명
그 중 한반도 : 역 22000 명 대만 : 약 28000 명
- 그 중의 60%가 아사 아니면 영양 실조에 의한 말라리아, 이질등의 병사
-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별 전몰자수
필리핀 : 약 50 만명 중국 : 약 45 만명 두 나라만으로 40%를 넘는다.
- ※ 무모한 작전에 의한 「헛 죽음」이 되었다는 실상이 숨겨져 왔다.
- 본래 같은 피해자이어야 할 일본인 유족과 구식민지 유족이 왜 분단 되었는지?
(전몰자 유족 원호법에 의한 돈의 힘과 유족회 지배에 의한 입막음)
- 그 유족 연금의 수속과 동시에 진행된 야스쿠니 합사 사무(국가가 관여 : 헌법위반)

2.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청산 없이 전후 60년을 맞이하는 것인가?

~과거 청산의 돌파구로서 유골 문제와 야스쿠니 문제가 있다.

※ 유골, 야스쿠니에 시효는 없다. 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일본인에 대해서는 현재 덧붙여 후생노동성이 관여해 유골 수집을 매년 실시
- 유골에 있어서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하는 필요성이 없다
- 시베리아 억류 한일의 피해자가 연휴
- 수상에 의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소송(6 지방법원에서 7 건) :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

3. 2005년(전후 60년)을 향한 제안

구식민지인 한국, 조선, 대만측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대해서

- (1) 유골 조사의 요구
- (2) 야스쿠니 합사 취소의 요구
를 강격하게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어, 일본측에 있는 운동 단체가 거기에 보답함으로, 과거의 청산에의 압력이 되고자 한다.

【참고 : GUNGUN 재판의 개요】

2001년 6월 29일 토쿄 지방재판소에 원고 252명이 제소.

2003년 6월 14일 원고 164명이 제2차 제소. (합계 416명)

(청구 내용) *생사 확인, 유골 반환 *미불 임금·군사 우편 저금의 반환
*야스쿠니 합사 절지 *손해배상, 사죄 *시베리아 억류 중의 미불 임금(특히 2차 제소)

(번역 김은식)

在韓軍人軍屬 (GUNGUN) 裁判を支援する会からの提案

支援する会事務局長 古川 雅基

1. 軍人軍屬から見たアジア太平洋戦争の実相

- ・太平洋戦争での軍人軍屬の死没者 約230万人
うち朝鮮半島:約22000人 台湾:約28000人
- ・そのうちの6割が餓死か栄養不足によるマラリア、赤痢等の病死
- ・意外と知られていない地域別戦没者数
フィリピン:約50万人 中国:約45万人 2つだけで4割を超える
- ※無謀な作戦による「無駄死に」という実相が隠されてきた
- ・本来同じ被害者であるはずの日本人遺族と旧植民地遺族がなぜ分断されたか?
(戦没者遺族援護法による金の力と遺族会支配による口封じ)
- ・その遺族年金の手続きと同時に進められた靖国合祀事務(國の関与:憲法違反)

2. 日本人として過去の清算のないまま戦後60年を迎えるのか?

- ~ 過去清算の突破口として遺骨問題と靖国問題がある
- ※遺骨、靖国に時効はない。また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言えない
- ・日本人に対しては現在なお、厚生労働省が関与して遺骨収集を毎年実施
- ・遺骨に日本人も外国人もないはず
- ・シベリア抑留 日韓の被害者が連携
- ・首相による靖国参拝に対する違憲訴訟(6地裁7件):福岡地裁で違憲判決

3. 2005年(戦後60年)に向けての提案

旧植民地である韓国、朝鮮、台湾側から日本政府に対して

- (1) 遺骨調査の要求
- (2) 靖国合祀取り消しの要求
を強く、効果的に行っていただき、日本側の運動団体がそれに応えることで、過去の清算への圧力をしていく

【参考: GUNGUN裁判の概要】

2001年6月29日 東京地方裁判所に原告252名が提訴。

2003年6月14日 原告164名が第二次提訴。(計416名)

- (請求内容) ·生死確認、遺骨返還 ·未払い賃金・軍事郵便貯金の返還
·靖国合祀絶止 ·損害賠償、謝罪
·シベリア抑留中の未払い賃金(特に二次提訴)

슬픔을 함께 — 홍간지사포로 별원강제연행희생자유골문제

작성 재홍철, 도노히라 요시히코
보고 도노히라 요시히코

■ 유골과 명부의 발견

1999년 12월, 죠도신슈 홍간지파 훗카이도 교구기간운동 추진위원회에 속하는 승려들이 이전부터 사포로 별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전시 회생된 강제연행 노동자 유골의 존재를 확인하는 조사를 착수했다. 2000년 4월에는 「유골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기간운동 추진위원회 안에 설립되어 조사를 진척한 결과, 합장된 채로 방치된 유골과 「유골유류품정리부」의 존재를 확인했다.



(희생자의 유골이 합장된 채 방치되어 온 죠도신슈홍간지파 사포로별원)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유골의 존재를 공표했다. 그리고 유골문제 진상규명과 유족에게 유골을 반환하기 위해 별원 스스로가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 훗카이도 포럼의 결성

사포로 별원 회견 당일, 유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교구내 승려들과 재일 민족단체, 민족연구단체, 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유골문제가 단순히 사포로 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훗카이도의 근현대사에 관한 과제이며 동아시아와 일본의 미해결 전후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별

원이 표명한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여 새로 포럼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하여 훗카이도 포럼은 2003년 2월 5일에 「강제연행, 강제노동 희생자를 생각하



(유골과 함께 발견된 「유골유류품정리부」. 표제는 1969년 7월 11일 니시홍간지 사포로별원에서 불물처리함이라 써어져있다.)

는 훗카이도 포럼」으로 결성되었다.

공동대표로는 홍간지파 승려, 기독교 목사, 중국 화교총회, 조선총련, 한국민단의 간부 등 5명이 취임했다.

포럼은 ①사포로 별원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문제 진상규명에 노력한다, ②사포로 별원의 유족조사와 유골반환에 협력한다, 등을 포럼의 당면 과제로 삼고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2번에 걸쳐 국내외의 연구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과 신포지움을 개최했다.

■ 유골조사

당초 확인된 유골은 치자키 (地崎) 공업 소유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었던 3개의 납골당지와 정화중이라는 납골당에 안치된 3개의 스틸상자였다. 그 분량에서 보나, 또 당시의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101명의 희생자의 유골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유골은 이미 1969년 7월과 1997년 10월에 2번에 걸쳐 합장되어 그 개별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별원측은 포럼의 요청에 따라 사포로의대에 DNA감정 가능성을 포함한 의학적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정화중의 유골에는 여성과 태아의 유골이 섞여 있고 치자키공업 납골당의 납골당지 유골은 그 분량에서 2~3명분이라고 했다. 이 의학적 감정결과를 놓고 별원은 정화중의 유골은, 희생자의 유골이 아니라 예전부터 별원이 보관해온 익명의 유골이라 하면서, 희생자의 유골은 치자키공업 납골당에 있는 납골당지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당초 증언을 한 관계자도 후에 차각이었다고 증언을 취소했다. 그러나 101명의 명부와 현존하는 유골의 분량 사이에는 명확한 모순이 있다. 과거에 합장된 후 다시 납골할 때 다른 유골이 혼입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유골조사는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치자키공업 납골당에 있는 유골은 당시의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모두 유골은 아니었으며 안에는 돌멩이, 염주구슬, 담뱃대만 들어 있었던 납골당지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 역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치자키공업 납골당에 있는 유골. 이 유골만이 희생자의 것이라고 한다.



(납골당지에 들어 있었던 돌멩이. 유골대신에 넣었다고 한다.)

■ 명부정리

발견된 「유골유류품정리부」에는 이름, 사망년월일, 사망시연령(일부), 본적지, 사역 기업명, 비고(일부 군속명기) 등이 써어져 있었으나, 포럼에서는 그간 다른 자료와 대조해 사역현장명 및 유골예입명목 등을 보완하여 더욱 상세한 명부를 작성했다.

신명부 작성은 다음 서류를 참고로 했다.

- 「유골기록」(별원법무부-1944년도)
- 「조선인노무자순직자명부」(일본건설공업조합홋카이도지부-1946년도)
- 예입서류 등(6종류)
- 토건관계철(1953년도)

■ 유족조사

101명의 명부중 본적지가 밝혀져 있는 회생자는 80명이다.

· 북 15명, 남 59명, 중국 6명

지난해 여름부터 유족조사를 시작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홍상진씨에게 의뢰하고, 한국에는 한일민족문제학회 김광열씨(광운대학교수)에게 의뢰했다. 또한 중국인 회생자는 포럼공동대표인 삿포로 중국 화교총회 석점명씨에게 의뢰했다.

마침내, 10월 8일 한국에서 유족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59명중 비교적 현재의 행정구역과 가까운 본적지를 가진 38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회의뢰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4건의 회답이 있어 그중 1건이 유족 확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3건은 지명이 이미 없어졌다거나 관내에 해당자 거주 사실이 없다거나, 본적에 유족이 없으며 지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확인된 유족은 스가와라구미(菅原組)에 사역되어 1944년 4월 18일에 치시마 지방에서 회생된 김익중씨의 형수 이옥순씨와 조카 김경수씨였다.

포럼에서는 곧 김광열씨에게 유족과의 접촉을 의뢰했다.

유족에게는 김익중씨의 유골이 홋카이도 삿포로시 사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골은 이미 합장되어 개별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사실대로 전했다. 그리고 당시 사정에 대하여 몇가지 증언을 청취하고 호적등본도 확인했다. (호적등본에는 사망한 해의 7월 9일에 관리인 세가와 코우타 명의로 사망통지가 되어 있었다.)

또한 공동대표 도노히라 요시히코씨가 11월 13일에 한국을 방문해 유족과 처음으로 면담했다. 이때 유족이 일본을 방문하여 유골과 대면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2월 1일에 개최한 「제2차 홋카이도 포럼」에 초청하기로 했다.

■ 유족의 일본방문

회생자 김익중씨의 형수 이옥순씨와 조카 김경수씨는 1월 30일에 삿포로에 도착했으며 한일민족문제학회 정혜경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동행했다.

1월 31일, 일행은 삿포로 별원 납골당에서 유골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또한 별원의 린반(책임자) 와 치자키공업 총무부장과 만나 유골에 관한 현재까지의 경과를 들었다.

유족은 2월 1일 「포럼」에 참가해 발언을 했다. 김경수씨는 발언에서 「앞으로 더 많은 유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함께 유족 찾기에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회생 당하기까지의 진상조사와 화해와 보상을 요구하고, 김경수씨가 고이즈미 수상 앞으로 보내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귀국당일인 2월 2일에는 홋카이도청을 방문해 지사(지사부재로 지사실장)과 면담 후 삿포로시청에서 시장을 면담하고 귀국했다.

■ 유족 김경수씨가 고이즈미 수상 앞으로 보내 편지(요지)

일본국 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님

저희 속부되시는 고 김익중은 … 노무동원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 치시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의 나이는 불파 22살이었습니다.

… 본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속부의 유골을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걱정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 유골의 존재가 확인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김익중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저희 유족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유골이 다른 회생자의 유골과 합장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유족은 사망자 개인의 유골을 분간도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슬픔과 함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강제연행은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 일본 정부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 해당 기업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유족은 … 현존 상태로 된 경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으로부터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 사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요구합니다. 귀하의 성실한 회답을 기대합니다.

2004년 2월 2일

고 김익중의 유족 김경수 드림

■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교섭

□ 일본 정부와의 교섭

현재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으나 유족이 고이즈미 수상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홋카이도청을 통하여 보내기로 하고 그 의사를 홋카이도 지사실장 다카이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지사실장은 《미묘한 문제》라고 하고 유족의 편지접수를 거부했을 뿐아니라 직접 면담한 자리(2월 2일)에서도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서 뭐라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위로, 격려의 말조차 없었다.

한편 삿포로시는 우에다 시장이 직접 유족을 면담하고 그 석상에서 시장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유족에게 사죄와 위로의 인사를 했다. 특히 삿포로시가 정부령 지정 도시가 된 1972년 이후, 묘지 등의 관리책임이 홋카이도에서 삿포로시로 이관되어 1997년 합장에 대해서도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 기업과의 교섭

「유골유류품정리부」에 기재되어 있는 유골예입기업은 14사이다.

삿포로 별원에서는 현존하는 기업은 치자키공업(당시 치자키구미) 만이라고 했으나 포럼이 조사한 결과, 스가와라구미도 스가와라건설로 현존하고 있으며, 모두 8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익중씨의 유족을 맞이함에 있어서 김익중씨를 직접 사역한 스가와라건설과 유골을 합장한 치자키공업과의 조속한 교섭이 중요했다.

그러나 삿포로 별원의 단가 총대인 치자키공업과의 직접적인 면담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1월 23일에 실현되었다.

① 치자키공업과의 교섭

- 교섭석상에서 치자키공업의 주주총회의 총무겸 재무부장 와다씨의 발언요지
- 당시의 관계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겠다.
 - 본적지를 알면서도 유골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
 - 합장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어 영대 공양할 생각이었다.
 - 유골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족 개인이 아니라 해당 나라에
반환하려고 한다.
 - 유족조사에 대해서는 현 회사의 재정사정상 어렵다.
 - 유족에게는 합장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다.

전반적으로는 책임회피로 일관되었으나 합장에 대해서 유족에게 사죄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1월 31일 별원에서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합장으로 고인의 개별성을 상실케한데 대하여 사죄하고 앞으로도 공양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② 스가와라건설과의 교섭

김익중씨를 직접 사역한 스가와라구미는 전후 파산해 홋카이도에서 철수하여 현재는 스가와라건설로서 이바라기현 미토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구 스가와라구미와 현 스가와라건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등본 이력을 조사해 삿포로 법무국과 변호사에게도 확인한 결과 회사는 틀림없이 그 법인인격이 계승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전제로 스가와라건설과의 교섭에 임했다.

- 제1차교섭

1월 14일에 서면으로 삿포로 별원에 유골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족의 일본방문에 즈음해서 성의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회답은 예상대로 구 회사는 파산하고 신 회사로 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대응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성의없는 회답이었다.

- 제2차교섭

1월 29일, 공동대표 채홍철씨가 직접 미토시에 있는 본사를 찾았다. 스가와라건설 주주총회 공사본부장 이케가키씨를 비롯한 4명이 나왔다.

스가와라건설측의 발언요지

- 반세기이상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온 유족에게 회답서라는 종이 한장 가지고 대응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 그러나 회장, 사장 이외 다른 임원들은 다가 전후에 입사한 사람이라 구 스가와라구미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의식조차 못해왔다.
- 포럼에서 서면을 받아 그저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 사장과 협의하여 성의있는 회답을 하겠다.

그후 2월 1일에 전화로 회사 주주총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좀더 시간을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 제3차교섭

3월 15일에 다시 공동대표 채홍철씨가 스가와라본사를 찾았다. 여기에는 한국문화방송 기자도 동행했다. 회사측은 취재진의 동행에 당황하면서도 취재에 응했다. 3차교섭은 취재진을 빼고 진행되었다. 채홍철씨가 유족 김경수씨가 스가와라건설 사

장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조속히 성의있는 회답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홋카이도 쿠시로시에 위령탑을 세워 해마다 위령제를 치르고 있는 사실을 듣고 위령제를 하는 회사의 입장과 삿포로 별원에 예입한 유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별원을 찾을려고 하지않고 있으며 김익중씨 유족에 불성실하게 대하는 회사의 입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와라측은 빠른 시일안으로 김경수씨에게 회답을 하겠다는 것과 4월말에 삿포로 별원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스가와라건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 홋카이도 포럼의 의의와 금후 활동 방향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군위안부」를 비롯하여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본정부와 관련기업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일본정부의 한일협정 체결로 보상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완고한 자세와 이를 법적으로 추인하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에로의 길은 멀어져만 갔다.

최근에 중국인 강제연행 희생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두 재판소가 판이한 판결을 내렸다. 3월 23일의 「중국인 강제연행 홋카이도 소송」은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원고측의 패소였으나 3월 26일에 니이가타 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리었다. 니이가타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운동에 희망을 주는 회보었으며 재판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결성한지 2년째를 맞이한 홋카이도 포럼은 유골을 맡아 온 삿포로 별원이 희생자 명부에 의거한 유족의 조사와 발견에 노력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반환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에 찬동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활동을 벌려왔다.

그것은 강제연행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와 보상과 함께 유골을 유족에게 반환하고 싶다는 바램과 동아시아의 화해와 우호의 과제를 시야에 넣은 운동으로 시작했다.

사죄와 보상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서 실현되어야 하나 상호 민중사이의 화해와 우호는 상호 민중사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화해와 우호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이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다해야 할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상호 민중이 화해와 우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며 민중사이의 화해는 민중 만이 실현시킬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해자측 스스로가 반성하고 화해를 위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삿포로 별원의 유골문제는 별원이 우선 스스로가 과거 처사를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피해자의 고발이 먼저가 아니라 가해자가 먼저 사죄한다는 별원의 진지한 자세가 화해를 지향하는 한 결음을 만들었다. 사죄한 별원이 이 한해동안 스스로의 사죄와 고백에 상응한 행동을 했는지는 따로 겸증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홋카이도 포럼」은 한국, 조선, 중국, 일본의 민족과 국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운동이 추진되어 왔다. 바로 여기에 「피해국 측」과 「가해국 측」이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조사하고 공동의 작업을 함께 하므로써 해결의 길을 찾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재일민족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역사연구자, 학교교사, 종교인, 변호사, 시민운동 활동가들이며 일본의 선주민족인 아이누민족도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홋카이도 포럼」의 활동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혜와 힘을 다하고 있다.

■ 유족의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을

홋카이도 포럼이 1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도달한 지점은 유골문제의 해결은 유족 발견을 최우선하고 유족의 입장에 선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이었다. 유골의 주인은 유족이며 유족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유족의 의향을 떠나서 유골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삿포로 별원에 방치되어 온 조선인, 중국인 희생자의 유골은 오랫동안 이 원칙을 배반하고 유족을 찾지도 않고 유족이 아닌 관계자들의 합의나 판단으로 유골이 처리되어 왔다. 유족의 존재를 무시하고 유골을 마음대로 「합장」한 것에 별원과 기업의 반인도성, 위법성이 있다.

지난 2월 1일에 삿포로 별원에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개최된 「제2차 홋카이도 포럼」에 한국에서 희생자 유족이 참가했다. 납골당을 찾은 희생자 김익중씨의 형수 이옥순씨(77살)는 「아이고! 왜 넌 도망 안갔느냐!」고 하면서 유골 앞에서 통곡했다. 이 눈물의 절규를 듣고, 이 절규를 진지하게 듣는 것으로부터 유골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절규를 일본 정부와 책임 있는 기업은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2월 1일의 포럼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기업에게 유족을 성의있게 대할 것을 촉구했다. 희생자 유골을 보관하면서 오늘까지 유족과의 연락을 외면해 온 기업인 치자키공업은 별원에서 유족과 대면했다. 그리고 유골을 합장한 문제에 한한 것이었으나 유족에게 사죄했다. 김익중씨를 직접 사역한 스가와라건설(구 스가와라구미)은 포럼 대표가 본사를 찾아 대응을 촉구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후 포럼 측이 재삼 촉구해서 가까운 시일에 스가와라건설과 우포럼의 정식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월 1일 포럼이 끝난 후 한국정부는 유족찾기와 유골의 반환에 정부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외교통상부 국장 담화를 발표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이다. 유족인 김경수씨가 고이즈미수상 앞으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삿포로에서 보냈다. 같은 날 고이즈미수상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 자위대 기지에서 이라크파병 병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던지고 있었다. 유족이 보면 편지의 회답은 아직은 없다.

「제 2 차 홋카이도 포럼」에는 유족과 함께 수많은 한국, 재일, 일본의 연구자들과 관계자가 참가했다. 또한 한국의 이영희 한양대학 교수가 「역사를 근거로 동아시아에 진정한 화해를」이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했으며 한국가수 정태춘씨 내외가 희생자 추모공연을 하는 등 포럼은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에서의 참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련단체에서 메세지를 보내온 것도 포럼을 의의있게 해주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홋카이도 포럼 결성 당시부터의 방침인 유족 찾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유족의 의향에 따라 유골 반환을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이 유족의 찬동밀에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별원과 기업이 유족에게 사죄하고 스가와라건설과의 대화의 길이 열린 것은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의의있는 일이 된다.

■ 새 국면을 맞이하여 홋카이도 포럼은 계속 삿포로 별원의 유골반환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격려하고 주시하고 협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활동한다.

- ① 유골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하여 조사를 계속하고 유족에게 반환되어야 할 유골 확정에 노력한다.
- ② 유족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 남북한, 중국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더 많은 유족 발견을 지향한다.

- ③ 유족조사를 원활하게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족조사 기금」을 설립하고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관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 지방자치체, 관계 기업 등에 기금 거출을 요청한다.
- ④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계기업 14사중, 현존하는 기업을 조사하고 교섭을 한다.
- ⑤ 일본정부에 명부에 의거한 사실해명과 유족조사, 사죄와 보상을 요구한다.
 - 2002년 5월 10일부 「아시아태평양전쟁시의 치시마에로의 조선인연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가 있는 후생노동성보유 「구 육해군에 관한 자료」의 개시를 요구한다.
- ⑥ 홋카이도에 대하여 당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상황 조사와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한 전도적인 사원, 교회의 유골보관정형 조사를 요구한다.
 -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노무자의 보총은 해당 기업이 도청에 신청하고, 도청이 조선총독부에 의뢰하는 체계였다. 그 자료의 개시를 요구한다.
- ⑦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진상규명과 유족에게 유골반환을 하므로써 동아시아의 민족들 간의 네트워크를 키우고 민족 차원에서 화해와 우호를 지향하여 활동한다.

(끝)

悲しみへの共感 — 本願寺札幌別院強制連行犠牲者遺骨問題

作成 蔡鴻哲・殿平善彦 報告 殿平善彦

■ 遺骨と名簿の発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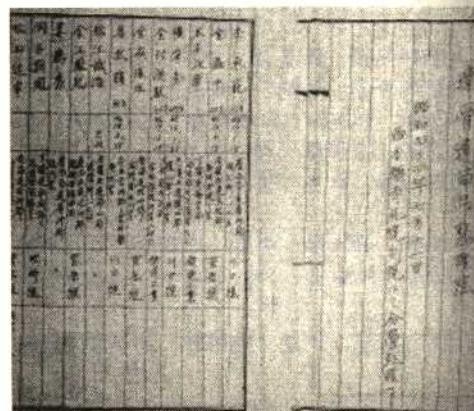
1999年12月、浄土真宗本願寺派北海道教区基幹運動推進委員会に属する僧侶たちが、以前から札幌別院に存在すると噂されてきた戦時下に犠牲となった強制連行労働者の遺骨の存在を確かめる調査に着手した。



(犠牲者の遺骨が合葬されたまま、放置された浄土真宗本願寺派札幌別院)

遺骨問題の存在が明らかにされた。

これを受け札幌別院は、内部に「遺骨問題委員会」を発足させ問題解決への自主的な活動を開始するが、2002年12月6日、犠牲者に対しての法要を営み、つづく記者会見の席上で初めて遺骨の存在を公にした。そして、遺骨をめぐる問題の真相究明と遺族への遺骨返還に別院自らが努力することを表明した。



(遺骨と共に発見された「遺骨遺留品整理簿」表題は、昭和44年7月11日西本願寺札幌別院にて分骨処理す、とある。)

■ 北海道フォーラムの結成

札幌別院の会見の当日、遺骨問題に関心を寄せる同教区内僧侶や在日民族団体、民衆史研究団体、学者など多くの人々が集い会合をおこなった。話し合う中、遺骨問題は単に札幌別院だけの問題にとどまらず、北海道の近現代史にとっての課題であり、東アジアと日本との未解決の戦後責任をめぐる問題でも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た。そして、別院が表明した遺骨問題解決への努力に対して協力し、共に速やかな問題解決を目指すため、新たな会を立ち上げることになった。

こうして北海道フォーラムは、2003年2月5日、「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として結成された。

共同代表には、本願寺派住職、キリスト牧師、中国華僑総会、朝鮮総聯、韓国民団の役員など 5名が就任した。

フォーラムは、①札幌別院における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の遺骨問題をめぐる真相解明に努力する②札幌別院が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遺族調査と遺骨返還に協力する、などを自らの課題として活動をおこなってきた。また、昨年と今年2回にわたって内外の研究者、専門家を招きフォーラム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た。



(淨華衆という納骨壇に安置されているスチール箱三つの遺骨。当初は犠牲者のものとされていたが、その後医学的鑑定を根拠に否定された。)

■ 遺骨調査

当初、確認された遺骨は地崎工業所有の納骨堂に安置されている三つの骨つぼと淨華衆という納骨壇に納められている三つのスチール箱であった。その分量からしても、また当時の関係者の証言からも101名の犠牲者の遺骨であることは疑う余地はなかった。

しかし遺骨は、1969年(昭和44年)7月と1997年10月に、二度にわたって合葬されており、その個別性は完全に失われていた。

そこでフォーラムの求めにより別院は、札幌医大にDNA鑑定の可能性を含め、医学的な鑑定を依頼した。鑑定結果は、淨華衆の遺骨には女性と胎児の遺骨が混在している、地崎工業納骨堂にある骨つぼの遺骨は、その分量から2~3体分であるとした。これを受け別院は、淨華衆の遺骨は犠牲者の遺骨ではなく、以前から別院が預かってきた無縁仏の遺骨であるし、犠牲者の遺骨は地崎工業納骨堂にある骨つぼのみとした。

これについて、当初証言をした関係者も、後に思い込みであったとし証言を翻している。しかし、101名の名簿と現存する遺骨との間には明らかな開きがある。

過去におこなわれた合葬とその後、再び納骨された際に他の遺骨が混入した可能性も含め、遺骨調査は解明されるべき謎をはらんでいる。

なお、地崎工業納骨堂にある遺骨は、当時の関係者の証言からすべてが遺骨ではなく、中には石、数珠の玉、キセルのみの骨つぼもあったとされている。これも、解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



(骨つぼに入っていた石、遺骨の代わりに入れられたとされている。)



(地崎工業納骨壇にある遺骨。この遺骨のみが犠牲者の遺骨とされている。)

- ・預入れ書類など(6種類)
- ・土建関係綴(昭和28年度)

■ 遺族調査

101名の名簿中、本籍地記載がある犠牲者は80名であった。
・朝鮮半島北半部 15名 ・朝鮮半島南半部 59名 ・中国 6名
昨年夏より遺族調査を開始し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は、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洪祥進氏に依頼をし、韓国については韓日民族問題学会金廣烈氏(光云大学教授)に依頼した。また、中国人犠牲者についてはフォーラム共同代表である札幌華僑總会席占明氏に依頼した。

そして10月8日、ついに韓国から遺族発見の知らせが届けられた。
韓国側では、依頼された59名中、比較的現在の行政区域と近い本籍地をもつ38名について優先的に調査をした結果、地方自治体より4件の回答があり、その内1件は遺族確認がとれたという内容であった。(他の3件は、地名がすでに無い、管内に遺族居住の事実がない、本籍に遺族がおらず知る人もい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

確認された遺族は、菅原組に使役され1944年4月18日に千島地方で犠牲となった金益中氏の義姉李玉順氏と甥の金敬洙氏であった。

早速、金廣烈氏に遺族との接触を依頼した。
遺族には金益中氏の遺骨が北海道札幌の寺院に保管されているが、合葬されたため個別性が完全に失われていることをありのまま伝えた。また、当時の記憶をもとにいくつかの証言聴取と戸籍謄本の確認をした。(戸籍謄本には、死亡した年の7月9日に管理人瀬川興太郎により死亡通知がなされていた。)

また、共同代表の殿平善彦は11月13日に訪韓し遺族との面談をおこなった。
遺族からは、来日して遺骨との対面を果たしたい旨の意思表示があり、本年2月1日の「第二回北海道フォーラム」に合わせて北海道へと招待することになった。

■ 遺族の来日

犠牲者金益中さんの義理の姉に当たる李玉順氏と甥の金敬洙氏は、「第二回北海道フォーラム」への出席に先立ち、1月30日に来日された。遺族には韓日民族問題学会鄭瓊卿氏(韓国精神文化研究院)らも同行して来日した。

■ 名簿整理

発見された「遺骨遺留品整理簿」には、氏名、死亡年月日、死亡時年齢(一部)、本籍地、使役企業名、備考(一部、軍属明記)などが書かれていたが、フォーラムとしてはこの間、他の資料との照合を進めながら、使役現場名および預入れ名目などを補完し、より詳細な名簿を作成した。

(別表II参照)

照合は次の書類をもとにおこなった。

- ・「遺骨控え」(別院法務部一昭和19年度)
- ・「朝鮮人労務者殉職者名簿」(日本建設工業組合北海道支部一昭和21年度)

1月31日、一行は札幌別院納骨堂で遺骨と対面を果たす。別院輪番及び地崎工業総務部長とも面会し、遺骨を巡る今日までの経過が遺族に説明した。

2月1日、「フォーラム」に参加。壇上で金敬洙氏は、「これからも少しでも多くの遺族を発見することが大切です。私も遺族発見の為に皆さんと共に行動していきたい」と発言された。更に、犠牲に対する真相の調査、そして和解と補償を求める小泉首相宛の書信が読み上げられた。

2月2日、北海道庁を訪れ知事(不在の為知事室長)と面会の後、札幌市役所で札幌市長とそれぞれ面会して、帰国の途についた。

■ 遺族金敬洙氏が小泉総理に宛てた書信(要旨)

日本国首相 小泉純一郎 殿

私の叔父である金益中は…労務動員という名目で強制的に連行されました。
…千島で死亡したとされています。死亡した時の年齢はわずか22歳でした。
…本人が死亡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と当該企業は叔父の遺骨を私たち遺族に届けなかつたばかりではなく正式に謝罪と補償もしないまま半世紀の歳月が心痛の中で流れ過ぎました。
…遺骨の存在が確認され難く思っています。しかし、半世紀以上にわたり故金益中の行方を捜していた私たち遺族に知らされたことは、すでに遺骨は他の犠牲者の遺骨と「合葬」されているという衝撃的な事実でした。
私たち遺族は、死亡者個人の遺骨を判別すらできない状態にしたことに対し、悲しみと怒りを抑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強制連行は、当時日本政府の責任のもとで実施されたものです。よって、…日本政府が相当の責任を果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当該企業もその責任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私たち遺族は、…現状のようになった経緯について、正式に日本政府と当該企業から責任ある説明を聞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謝罪し正当な補償を求めるものであります

■ 国および企業との交渉

□ 国との交渉

現在、日本政府とは直接的な接触はおこなっていないが、遺族が来日に際して小泉総理に書信を送りたいとの申し出があり、北海道庁を通じて送ることにし、その旨、北海道知事室高井室長に要請した。

しかし、知事室長は《微妙な問題なので》と遺族の書信の受取を拒否、また直接面会した席上(2月2日)でも、《色々と難しい問題を抱えているので、この場で答える立場はない》とし、労い、お悔やみの言葉すらなかった。

一方、札幌市では上田市長が直接遺族を出迎え、時には涙を流しながら、謝罪と労いの言葉を遺族にかけた。特に、札幌市が政令指定都市となった1972年以降は墓地などの管理責任が道から札幌市に移管されており、1997年の合葬について誠に遺憾であると答えた。

□ 企業との交渉

「遺骨遺留品整理簿」に記載されている遺骨を預け入れた企業は14である。

札幌別院は、現存する企業は地崎工業(当時地崎組)のみであるとしたが、フォーラムの調査の結果、菅原組も菅原建設として現存するなど8社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

金益中氏の遺族を迎えるにあたって、犠牲者を直接使役した菅原組と遺骨を合葬した地崎工業との交渉は急務を要した。

しかし、札幌別院の檀家総代でもある地崎工業との直接面談は困難を極め、ようやく本年1月23日に実現した。

①地崎工業との交渉

対応した地崎工業取締役総務・財務部長和田氏の発言要旨

- ・当時の関係者はすでに他界していて事情がよくわからない。
- ・本籍地が明記され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返還しなかつたことについては、そこまで考えがつかなかつたとしかいいようがない。
- ・合葬については申し訳なく思っている。ただ、隠蔽ではなく会社倒産の危機的状況にあり永代供養の発想だった。
- ・遺骨は返還されるべきであると考える。しかし、個人ではなく国にお返ししたい。
- ・遺族調査については、現在の会社の財政事情から難しいと考える。
- ・遺族には合葬についてお詫びしたい。

全般的には責任逃れに終始したが、合葬について遺族に謝罪をするという意思表示は一步前進であった。事実、1月31日に別院で遺族に会った際、合葬について個別性を失う結果を招いた事について謝罪し、これからも供養を引き続きおこなっていくと述べた。

②菅原建設との交渉

金益中氏を直接使役した菅原組は、戦後倒産し、北海道から撤退して現在は菅原建設として茨城県水戸市に本社を置いている。

菅原建設の会社謹本履歴を取り、札幌法務局相談員および北海道合同法律事務所石田明義弁護士に確認をしてもらったが、間違いなく法人格が継承された会社であるとの見解をもらい菅原建設との交渉に挑んだ。

まずは、1月14日付書面で遺族来日に際して誠意ある対応を促したが、回答は予想通り旧会社は倒産して新会社となった、したがって資料が無いため対応する根拠がない、とのことだった。

1月29日、共同代表蔡鴻哲が水戸市の本社を訪れた。

対応したのは、取締役工事本部長池垣氏をはじめ4名。発言要旨

- ・半世紀以上にわたり、辛い日々を送ってきた遺族に対し、回答書という紙切れ一枚で対応したことについては申し訳なく思っている。
- ・ただ、会長、社長の以外の役員はすべて戦後の入社のため、旧菅原組について日常の企業活動の中で意識したことすらなかった。
- ・文書をもらひただ驚き、戸惑い、なにをどう対処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が現状である。
- ・社長と協議をして誠意ある返答をしたい。その後、2月1日に連絡があり、正式に取締役会で協議をしたいのでもう少し時間をほしいとのことであった。

■ 北海道フォーラムの意義と今後の取り組み

1990年代から今日まで、「従軍慰安婦」をはじめ強制連行、強制労働に対する謝罪と補償を求める運動が、日本政府と関係企業を相手に行われてきた。しかし、一部の和解への動きを除けば、殆どが日本政府の、日韓条約締結により補償問題は最終的に解決したという頑なな姿勢と、それを法的に追認する裁判所の判決によって、解決への道は閉ざされがちであった。

最近、中国人強制連行犠牲者の補償を要求する裁判の判決が二つ続いた。3月23日の「中国人強制連行北海道訴訟」は、札幌地裁において原告側の敗訴、しかし、3月26日には新潟地裁で原告勝訴の判決があった。新潟地裁の判決は私たちの運動に希望を持たせるものであり、裁判の重要性を確認させた。

取り組み以来2年目を迎えた北海道フォーラムは、遺骨を預かってきた札幌別院が、犠牲

者名簿に基づく遺族の調査と発見に努力し、お骨を遺族にお返ししたいという表明に応えようとして活動を行ってきた。

それは、強制連行の犠牲者とその遺族への謝罪と補償と共に、遺骨を遺族にお返したいという願いを込めた、東アジアの和解と友好の課題を視野に入れた運動として始められた。

謝罪と補償は国家と企業の責任において実現されねばならないが、相互の国の民衆の間における和解と友好は相互の民衆において実現されねばならない。和解と友好のために国家と企業が果たさねばならない責任が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無い。しかし、国家と企業が果たすべき責任を求めつつ、相互の民衆において和解と友好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が可能であり、民衆における和解は、民衆においてこそ実現できる。

そのためには、歴史的な加害の側が自主的に反省し、和解を目指して取り組みを始める必要である。札幌別院に於ける遺骨問題においては札幌別院が、まず自分たちの過去の行動を反省し、遺族に謝罪するところから取り組みが始まった。つまり、被害者の告発に先立って加害者の側の謝罪という札幌別院の取り組みの姿勢が和解に向けた一歩を作り出した。謝罪した別院が、この一年間、自らの謝罪と告白に相応しい行動をなしてきたかどうかは、別に検証されねばならないが。

次に、「北海道フォーラム」は韓国・朝鮮、中国、日本の民族と国家を横断した人々の共同の努力によって運動が進められてきたことである。ここに「被害国側」と「加害国側」がともに出会い、論議し、調査することで解決の道を探る試みが始まった。集まった人々は、民族団体を構成する人々と共に、歴史研究者、教師、宗教者、弁護士、市民活動家などであり、アイヌ民族も参加した。このように「北海道フォーラム」の活動には、多様な人々が多様な知恵と力を出し合っている。

■ 遺族の立場に立った問題の解決を

私たちフォーラムの一年間の活動でたどり着いた地点は、遺骨問題の解決は、遺族の発見を最優先とし、遺族の立場に立った問題の解決という方法である。

思えば、お骨が遺族のものであり、遺族以外の誰もが遺族の思いと無関係に遺骨を左右することは許されることでないことは分かりやすい道理なのだ。しかし、札幌別院に置かれて来た朝鮮人、中国人犠牲者の遺骨は、長い間この原則に反して、遺族を捜すことなく、遺族以外の関係者の合意や判断で遺骨が処理されてきた。遺族の存在を無視して遺骨を勝手に「合葬」したところに別院と企業の反人道性、違法性が存在する。

去る2月1日札幌別院を会場に200人の参加で開かれた「第2回北海道フォーラム」に韓国からの犠牲者の遺族が参加した。納骨堂に案内された犠牲者金益中さん(1944年4月千島方面で死亡)の兄嫁にあたる李玉順さん(77歳)は「アイゴー、あんたは何故逃げなかつたの」と言って遺骨の前で泣き崩れた。この叫びを聞き、この声にしっかりと耳を傾けることから遺骨問題の解決は図られねばならない。何よりもこの声を日本政府と責任ある企業は謙虚に聞かねばならない。2月1日のフォーラム開催を前にして私たちは、責任ある企業に、遺族に企業として責任ある態度で遺族と会見することを求めて通知を出した。犠牲者の遺骨を保管しながら、今日まで連絡を怠ってきた企業である地崎工業は、札幌別院に赴いて、遺族と対面した。そして、お骨を合葬してことについてだけではあったが、遺族に謝罪した。金益中さんを直接使役した菅原建設(旧菅原組)は、フォーラム代表が会社を訪問して対応を迫ったが、今まで、正式な対応がなされていない。その後、フォーラムからの申し出で、近く菅原組とフォーラムとの正式な対話の機会が設定されようとしている。2月1日のフォーラム終了後、韓国政府は、遺族探しと遺骨の返還に協力するという外交通商省の局長談話を発表した。問題は日本政府である。遺族である李玉順さんの長男金敬洙さんは小泉首相あ

てに謝罪と補償を求める書簡を投函した。その同じ日、小泉首相は旭川市の自衛隊駐屯地でイラクに派兵される自衛官に激励の言葉をかけていた。遺族から投函された手紙に首相からいまだに返事は来ない。

「第二回北海道フォーラム」には、韓国、在日、日本の研究者と関係者が集い、韓国で発見された遺族が直接参加した。又、記念講演を「歴史を踏まえて東アジアに真の和解を」と題して李泳禧漢陽大学教授が行った。フォーク歌手鄭泰春さんが犠牲者追悼コンサートを行うなど、多彩なフォーラムとして開催された。また、韓国の市民団体からの参加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関連団体からメッセージが寄せられたことも、フォーラムを意義あるものとした。

この度のフォーラムを通じて、北海道フォーラムの結成当初からの方針である、先ず何よりも、遺族を捜すことに力を尽くし、遺族の意向にそって遺骨の返還を進めるという基本方針が、遺族の賛同をいただき、再度確認されたものと考える。

特に、別院と企業がそれぞれの立場で遺族に謝罪し、菅原建設との話し合いの道筋がつけられたことは、これからのお真相究明と問題解決において意義のある出来事だったと考える。

■ 新しい局面を迎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は、引き続き札幌別院の遺骨返還への主体的努力を励まし、監視し、協力しながら当面、次のような取り組みを考えている。

- ① 遺骨を巡る真相究明の為、引き続き調査を継続し、遺族に返還されるべき遺骨の確定に努力する。
- ② 遺族調査を広範囲に進めるため、引き続き韓国、朝鮮、中国の政府と民間団体の協力を求め、一人でも多くの遺族の発見に努める。
- ③ 遺族調査を円滑に進めるため「遺族調査基金」を設け、強制連行・強制労働に関与し、責任を負うべき政府、地方自治体、関係企業等に対して基金への拠出を求める。
- ④ 真相究明のため関係企業11社中、現存する企業を調査し交渉をおこなう。
- ⑤ 日本政府に対し、名簿に基づく事実解明と遺族調査、謝罪と補償を求める。
 - ・ 2002/05/10付、「アジア太平洋戦争時の千島への朝鮮人の連行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に記載がある厚生労働省保有「旧陸海軍に関する資料」の提示を求める。
- ⑥ 北海道に対し、当時の強制連行・強制労働状況の調査と「墓地・埋葬などに関する法律」第18条に基づく全道の寺院、教会の遺骨保管状況の調査を要求する。
 - ・ 当時の資料によると、労務者の補充は該当企業が道庁に申請し、道庁が朝鮮総督府に依頼するというシステムであった。その資料の開示を求める。
- ⑦ 強制連行、強制労働の歴史の真相解明と遺族への遺骨の返還を試みることを通して、東アジアの民衆の協力のネットワークを育て、民衆における和解と友好を目指して活動する。

祐天寺유골과 그 봉환에 대하여

李一満

東京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지난 세기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 침해당한 우리 민족은 말과 이름 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겨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피눈물을 뿐이며 이역땅에서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신 1세들과 그 자손인 저희들은 오늘도 『아니 청산된 역사』 속에 살고있습니다.

일본東京目黒区에 祐天寺가 있습니다. 1718년 江戸막부시대에 건립된 이 명찰에 浮島丸폭침과 여러 곡절로 희생된 우리 겨레들의 유골이 오늘현재도 1,136구 남골되어있습니다. 해마다 8월 22일이면 이 절에서 조선인전쟁희생자추도회가 진행됩니다. 『浮島丸폭침사건희생자』가 아니라 『조선인전쟁희생자』라고 하는것은 『창씨개명』 된 일본이름으로 몇십개상자에 분골된 여러 유골이 납골당에 들었기때문입니다.

납골당에는 東京국제재판에서 포로학대등으로 B·C급전쟁범죄자가 되여 처형당한 사람들과 로룡우(창씨개명:河田清治)로 알려진 神風특별공격대원 및 부라운섬에서 대포밥이 되고만 구일본군인군속으로 있던 사람들의 유골이 뒤섞여 들어있습니다. 납골당위패에는 『태평양전쟁조선반도출신 구일본군인군속전몰자의 명』이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련행(강제징병, 강제징용) 당한 우리 겨레들을 일본정부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 없이 안치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전몰자』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인데 우리 겨레들은 결코 전쟁으로 죽은것이 아닙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죽인것입니다. 『침략』을 『진출』로, 『폐전』을 『종전』으로 바꾸어 역사의 진실을 교묘하게 외곡·부인하는 일본의 본성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浮島丸폭침사건』 희생자들의 유골이 祐天寺에 봉납·안치된것은 1971년 6월입니다. 사건당시 현장에서 회수된 유골은 舞鶴海兵団에 가매장되였으며 배와 함께 가라앉은 유골은 회수안되였습니다. 1953년 3월 선미부문을 인양했을 때 103구의 유골이 회수되였습니다. 이 유골은 사건당시 가매장되였던 유해와 함께 화장되었습니다. 유골에도 인격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훼손, 모독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아 한번 태운 유골을 새로 회수한 유골과 합쳐 다시 화장하였으나 일본정부는 DNA 감정도 못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1954년 1월 선수부분을 인양했을때도 245구(※340여구라는 설도 있음)의 유골이 회수되였습니다. 이 유골들은 舞鶴東本願寺別院에 보관되였다가 1965년 일본정부 후생성(당시)引揚援護局을 거쳐 1971년 6월 祐天寺에 옮겨졌습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인 1965년부터 6년간 후생성인양원호국이 유골을 지하실에 가安置하였는데 그것은 봉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1989년 두 정부는 유골의 일괄 봉환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자가 남북에 있고 일본정부에 의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보상도 없이 봉환하려 하였으니 결국은 좌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골이 祐天寺에 옮겨진 직접적 계기는 일본정부 외무성, 후생성 간부들과 친교가 있던 당시 주지가 "정부가 관리를 매우 곤난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절에 안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주지가 불교도의 양심으로 안치하기로 하였다면 일본정부는 보관의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찰은 오늘도 아침마다 공양을 올리는 데 보관마저 부담으로 여기는 일본정부는 말간지 서른세해가 되는 오늘까지 정부후생대신이 祐天寺를 찾은 것이 단 한번 (1995. 3. 井出正一) 밖에 없습니다. 뜻있는 일본사람들과 우리 총련 및 민단이 해마다 하는 추도회에는 물론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1971년 6월 현재 2,231구 (*2,328 구라는 설도 있음) 있었던 유골이 오늘은 1,136구, 그 중 《浮島丸폭침사건》 관계자것이 280구 (*13구라는 설도 있음), 아이들 유골이 54구 무주고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북출신 사람들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남출신자들의 유골은 1971년 11월에 학도출진자인 246구가 봉환되고 1972년 2월 7일자 서울신문에 관계자명부가 게재된 것을 계기로 1974년 12월에 911구가 남측 유가족들에게 봉환되었으며 일부는 유가족들이 직접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봉환·인도는 일본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포와 부산공항에서 두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창씨개명》 된 일본이름이고 유골이 진짜 제아버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받기를 거절한 유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 일본정부는 1970년부터 1998년 사이에 1,192구 봉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가 입수한 浮島丸死沒者名簿 (大湊海軍施設部) 의 고향과 평균년령을 보면

ㄱ. 시설부

충남 : 103명	경남 : 44명
전북 : 89명	경기 : 19명
충북 : 85명	경북 : 12명
전남 : 57명	평북 : 1명
계 : 410명이 되며 평균년령은 경기가 30, 36세, 경북이 36, 16세입니다.	

ㄴ. 시설부외

경남 : 33명	경기 : 1명
경북 : 32명	본적, 이름불명 : 3명
충남 : 18명	판독불가능 : 17명
전남 : 10명	계 : 114명입니다.

경기도와 경북외는 년령기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성별도 식별하기 힘듭니다. 또 전남의 57명 속에는 전주나 정읍군도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북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부 15페이지에 林信夫 (24세) 평북박주군박주면립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북출신의 浮島丸관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주며 생존자들의 증언

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祐天寺에는 어데서 어떻게 죽고 어떤 경위로 이 절에 안치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한 유골이 있습니다. 고향은 평양, 이름은 河成柱 (창씨개명 : 河田成柱)입니다. 나머지 3구도 이북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고향도 알 길 없습니다. 이북출신의 수많은 "살아있는 령흔"들이 그리운 조국, 새 생활이 꽂피는 고향에 못 돌아가고 祐天寺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조선인전쟁희생자추도회》는 이제부터 16년 전인 1989년, 다시 말하여 두 정부 간의 일괄봉환합의가 깨져 유골을 계속 祐天寺가 안치하게 된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東京 立教대학의 後藤均平교수가 중심이 되여 시작된 추도회는 그의 뜻을 이은 小林喜平·鈴木公一씨들에 의하여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8월 6일의 広島, 9일의 長崎피폭행사와 똑같이 22일을 지내겠다고 합니다. 추도회에는 東京조선체 1초중급학교와 東京조선중고급학교 및 조선대학교교직원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17일 역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에서는 이른바 《랍치》 문제를 놓고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浮島丸가 떠난 青森県에 斎藤作治선생을 대표로 하는 "下北지역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浮島丸폭침사건을 수십년 연구해오신 斎藤선생은 "랍치가 문제지만 우리 일본이 과거 조선과 조선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역사의 사실을 학생들에게 얘기하겠다"고 재작년 11월 2일 눈오는 青森로부터 東京조선중고급학교에 나오시여 강연해 주시였습니다. ※ 向井미도리녀사 소개임.

강연을 들은 고급부 1학년 학생들은 《조선현대사》 73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이라 잘 이해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난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4월,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반조선인 풍조는 멎지 않고 있습니다. 치마저고리를 칼질당한 녀학생이 있는가 하면 전철 정거장 계단에서 갑자기 등을 밀리여 떨어져 중상을 입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과 글, 역사와 함께 민족의 얼, 겨레의 넋, 조선의 존엄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보란듯이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몇몇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외교통상부는 祐天寺에 안치되어 있는 浮島丸폭침사건희생자들을 포함한 이남출신자들의 유골 705구가 10월경에 봉환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골의 관할권이 후생로동성에 있는 것으로 량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정부가 1989년 유가족들의 반대로 좌절·실패한 유골일괄봉환합의의 재판입니다.

15년 전이나 오늘이나 상황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즉 일본정부에 의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장된 꽂다운 청춘들의 수많은 유골이 오늘도 舞鶴만바닥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골은 하루속히 봉환되어야 하며 봉환에서 기본은 유가족들의 의향입니다. 그러나 京都·大阪재판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사죄

없는 봉환은 진짜 봉환이 못됩니다. 봉환은 사죄의 결과라야 하며 보상은 사죄의 또하나의 표현입니다. 일본은 두번에 걸치는 선체인양때도 침몰원인을 알아보려 안했고 진상규명도 없이 "배상요구 거절"이란 보고서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죄없는 봉환은 도리여 진상규명을 영영 못하게 합니다. 일본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이 남출신자들의 유골만을 골라내겠단 말입니까? 일본은 이남에 넘긴 사망자명부를 이북에는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오늘까지 한구의 유골도 봉환안되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일본정부가 유골봉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곧 사건의 진상음폐와 사죄 및 보상회피를 의미하는것이고 이남정부가 유골봉환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곧 모처럼 제정된 성역없는 과거청산법인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대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의 승고한 리념에 근본적으로 어긋날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정혜경녀사는 《강제련행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의 미 청산과제》라면서 《재일동포의 존재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남긴 산물, 오리무중에 빠진 조일국교정상화교섭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굴비엮듯이 엮어내려오는 현재의 문제》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현대사의 한페이지를 이악하게 파헤쳐 浮島丸폭침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와 그에 맞먹는 보상을 요구해 나갈것입니다. 특히 유골의 완벽한 회수와 관계문헌의 공개를 강하게 요구할것입니다.

小泉 일본수상은 靖国神社參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石原東京都知事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그래도 인도적이고 인간적이였다"고 뇌같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浮島丸폭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도리여 무마해 온 일본에 국가의 모랄, 민족의 궁지는 없습니다.

일본은 해외침략에 나선 구일본군인들의 유골수집을 위하여 이미 100번이상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600억엔을 넘는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습니다. 후생로동성에 의하면 지난 전쟁때 일본의 해외전몰자는 240만명인데 오늘까지 그 반수를 넘는 124만명의 유골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는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 DNA감정도 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청산이 성의있고 깨끗하게 끝나는 그 날 일본의 전후는 비로소 끝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일본이란 浮島丸에 타고 있는 우리는 《浮島丸폭침사건》을 두고 북이 있고, 남이 있고, 재일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골의 인격, 인간의 존엄,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지난 역사를 똑똑히 청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故郷に帰れない客地無主孤魂

兵庫県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朝鮮人側)団長 梁相鎮

昨年、ソウル과 평壤で 42万7余名に上る朝鮮人強制連行被害者の名簿が公開され、平壤において朝鮮人強制連行拉致被害者遺家族協会が結成され、韓国においては日帝占領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制定された。

太平洋戦争時期に強制連行され、自分の父母妻子の元に帰れず、異境で客地無主孤魂となって彷徨っている強制連行被害者は数知れない。

兵庫県下においても身元不明の客地無主孤魂となっている事例がある。

【相生市の善光寺】

その一つが兵庫県相生市にある善光寺という寺に安置されていた約 60 体の無縫仏である。

相生市には 1907 年に播磨造船所が創立され、第一次世界大戦を経て日本が大陸侵略と太平洋戦争へと進む中で軍艦の建造と船舶需要の増大とともに造船所規模の拡大と、関連企業や下請け工場が多数進出した。

造船所拡大のための工場用地造成と、ドック開削工事、海岸埋め立て工事、鉄道工事等に伴う労働力は、植民地朝鮮からと仕事を求めて日本各地から集まってきたわが同胞によって補われた。

兵庫県朝鮮人真相調査団の調査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相生市戸籍簿と寄留簿には 1928~1958 年の間に 214 戸 994 名が記載されていた。これには播磨造船所に強制連行者は軍関係だとしてこれには含まれていないが、建設現場の飯場にいた労働者は流動性があるために一々寄留届を出していないその当時の状況を考えて見ると、造船所内の造船作業以外の膨大な土木工事に従事した朝鮮人労働者は強制連行以前から存在し、その数も相当数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な朝鮮人労働者は、相生市日の浦地区だけを例にあげても、人里離れた谷間に雨が降れば水に漬かる地面の低いところにブラック建ての飯場で約 2,000 余名が非人間的な劣悪不衛生の生活環境の中で生活していた。

その上我が同胞労働者は、工場用地造成とドック開削のための突貫工事等に牛馬のように酷使され、重労働や難工事によるダイナマイト発破事故やトロッコ転覆事故等によって毎日のように事故死があったとしている。

また不衛生な生活環境と貧しい生活のなか充分な医療を受けられない条件において、病人が続出して幼い子供も病死者も多数あった。

このような死亡した人たちの遺骨の中で朝鮮の故郷に帰れなかったのがそのまま善光寺に預けられたように見える。

善光寺の住職は、「当時、差別と蔑視のなかで遺骨を預かる寺もなく先代の住職が朝起きてみると朝鮮人名前が入っている骨壺がこっそりと置かれていて

た、あるものはキャラメルの箱に入っているのや、一つの壺に10体も入っているものもあった。当時の朝鮮人は貧しかったので葬式もできなかつたので、こつそりと人の見えないところで焼いて海に流したものもあった」と述べていた。

また播磨造船所の強制連行者でリンチによって殺された被害者が誰も知られずに火葬してその遺骨を新聞紙包んで寺の門前に置かれているものもあつたとされ、造船所付近の竹藪に、朝鮮人や中国人の死体が山積みになつて、放置されていたという付近の日本人の証言もあつた。

善光寺に預けられていた遺骨は現在、相生市市営靈園に相生市の協力と同胞組織と有志によって『韓国朝鮮人無縁仏之碑』が建立され、ここに安置されている。

しかしこの無縁仏之碑にある遺骨が納められているという約60体のなかで、1926.~1944年間に死亡したという5人は氏名と死亡年月日は記されているが、本籍地も生年月日、死亡原因や死亡場所等は不明である。それ以外の遺骨も氏名も本籍地を知ることのできない無名のもので故郷に帰ろうにも帰れる

(帰る) ことができない、ただ日本の空にさまよう完全な客地無主孤魂である。

例え死亡証明や、火葬証明が閲覧できても、闇から闇へとひっそり葬られたこの人々の身元を確認する術はない。

まさに植民地奴隸の悲哀が、この日本相生市にある『韓国朝鮮人無縁仏之碑』に安置されている無縁仏に象徴されている。

【神戸市の東福寺】

日帝占領下に強制連行され植民地奴隸として没義道に無縁仏にされた強制連行被害者が兵庫県神戸市にある川崎重工業製鉄所葺合工場でもあつた。

川崎重工業製鉄所葺合工場は、日本有数の日本の軍艦を建造する川崎重工業神戸艦船工場に鉄板や鋼材を生産し供給する製鉄工場で、朝鮮から1,398名の強制連行があつた工場である。

1945年6月5日、米軍のB-29爆撃機による神戸大空襲によって、無縁仏となつた朝鮮人労働者の約50体分の遺骨が、三つの石炭箱に骨を碎いてぎっしりと詰め込まれたものが、神戸市葺合区（現、中央区）ある東福寺という寺に持ち込まれた。

川崎製鉄所葺合工場が提出した『厚生省調査名簿』によると、この神戸大空襲があつた6月5日に4名（平北3名、咸北1名）の空襲死者があつたことと、この日を前後する3日間に60人の脱走者があつた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この60名の行方不明者は何処に行つたのか？

検証1、当時、付近に住んでいた同胞が川崎重工業製鉄所葺合工場の寮にあつた三つの防空壕で平安道の朝鮮青年が殆ど死んでいたという証言がある。

検証2、この防空壕には逃亡防止のために出入り口が一つしかなく、焼夷弾空襲のなか火炎を避けて逃げることができずに、そのまま防空壕の中で焼死したと見られる。

検証3、強制連行者の脱走には日本公安（憲兵と警察、警防団）が日常警戒

しているなかで60名の大量脱走があつたのにも関わらず、（にも関わらず）捜索騒動が起きた様子がない上に、これらの人たちは行方不明のままである。

検証4、無縁仏はどこか集中しているところでなければ、約50体の朝鮮人労働者とまとめるることはできない。散り散りに逃げたならば、日本人も多数焼死している状況の中で、朝鮮人労働者として身元確認ができず日本人の一般行方不明者として処理されている。

検証5、これら60名の脱走者を約50体分の無縁仏と処理すれば、川崎製鉄には、死者の埋葬費や遺族に対する慰謝料、祭祀費、遺骨送還費等の諸費用を支出する必要がなく、食糧配給を継続して受ける利点があった。

以上のようにこの約50体の無縁仏は空襲時に脱走した60名である可能性は高い。兵庫県真相調査団は、この60名の名簿（平安北道、10名、黄海道、31名、咸鏡北道、19名）を朝鮮の『日本軍く慰安婦くおよび強制連行被害者補償対策委員会』に送り、該当者か、その家族に対する調査を依頼し、その消息を知ることによって、東福寺に納められている無縁仏の身元を確認したいと考えている。

空襲被害者に対して川西航空機甲南工場では日本人と共に慰靈祭を行い、中央ゴムのような処でも連行者の帰国に際して死亡者の遺骨を持たせて帰えら（帰ら）している。たとえこのような死亡者に対しては形式的にも補償を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川崎製鉄はこのような慰靈や帰国処置を行つたようにも見えない。

川崎製鉄のこのような没義道な措置は、朝鮮民族の運命が植民地奴隸であつたがために日帝の非人間的な行為の一端であつて、決して許す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り、身元の確認による謝罪と補償を行わせることによって、客地無主孤魂となった強制連行者、植民地被害者の恨を晴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以 上

장생탄광 (야마구치현 우베시)

김정원

야마구치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사무국장

[개략]

1914년, 야마구치현 우베시 니시키와(현재)에 창설된 해저탄광. 1940년에는 생산량 15만 3천톤, 광부수 958명이 되는 중견탄광의 하나.

우베시의 탄전은 해저에 펴져 해안선에 따른 얕은 지층에 있어 우베바다의 수심킬로에까지 깊도가 늘어나고 있었다. 대소탄광이 수십개소 있어 정성기의 생산량은 년간 400만톤, 그중 약 80%가 해저로부터의 채탄이였다. 탄총이 얕은 지층에 있었기에 각 탄광에서는 해저함몰, 해수진입에 의한 수몰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장생탄광도 얕은 지층의 채굴을 강행하고 있었기에 1922년 5월에 수몰사고가 발생하여 일시 휴업했다. 1933년에 히가시우베탄광주식회사(뢰손사장)가 재개하여 1942년 2월 3일 또다시 수몰사고(당시 일본에서 최대규모)가 발생한다.

[강제련행]

장생탄광에는 본격적인 강제련행이 시작되는 1939년 이전부터 조선인광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현지에서는 <조선탄광>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모집】 탄광에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 조선말을 잘하는 일본인 2명이 모집계가 되여 직접 조선반도에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응모자들에게 「약 2년의 계약기간이 자나면 자유롭게 된다. 그 때에는 저금도 되여 있다」 등의 감언설명을 했다.

자료에 의하면 39년 10월, 경상북도의 249명을 계기로 42년의 사고까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10몇차례에 걸쳐서 합계 1258명이 강제련행당하였다.

그 어간에 많은 도주자가 나왔으나 보충을 위해 그를 넘는 인원수가 강제련행되었다.

【저항】 「1939년 고용한 238명의 조선인로동자 중 17명의 도망자가 있어 경계중에 더 2명의 도주할려는 것을 로무계가 발견해서 사무소에 련행구타했는데 그 보고를 들은 로동자들이 일제히 사무소에 란입 해 유리창, 전화 등을 파괴하는 등 로동자의 란투가 생겨 그 혼란을 타 24명이 도주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재일 조선인사 연구』(제10호))

[강제로동]

작업은 배로부터 석탄, 물자의 실어내리는 작업, 해안을 메우는 작업 등을 하는 갹외로동과 채탄, 굴진 등의 갹내로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수몰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갹내작업은 거의 조선사람에게 강요하였다.

한반도에서의 강제련행자와 기주 조선인로동자의 숙소는 따로 있었다. 강제련행자는 4동의 목조사택에 수용되어 둘레는 약 3.6M의 판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외출은 허가되지 않고 도망방지를 위하여 나무의 격자를 긴 창에서 손을 내여 통행자에게 궁상을 호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임금은 전시국채의 구입을 강요당하거나 강제저금을 당하였다.

[사망자]

1942년 2월 3일 새벽, 갹구리부터 약 1킬로 앞바다의 깊도에 바다물이 들어 가 해저 함몰하였다. 갹내에서 로동자중에는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183명의 희생자를 내였다. 이 사고는 아시아태평양전쟁시대 최대의 사망자를 낸 대참사였다. 사망자 183명 중 약 70%인 133~135명이 조선사람였다.

사고 직후 조선인 희생자의 처들이 울부짖는 「아이고!」의 소리로 소요상태에 빠져 진압을 위해 현병과 특고경찰도 출동하였으나 수습이 되지 않았다. 탄광경영자는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현지의 사이코우지의 주직에 의뢰해서 하룻밤사이에 장의식을 실시했다.

사망자는 위폐수와의 오차는 있으나 대일본 산업보고회편 「순직산업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목격 증언】 금춘분씨 (73세 여성 이즈카시) 청취 2003년 3월

로무계가 목검으로 조선사를 갹내에 쫓아 버린다.

나는 당시 초등학교의 6학년이였다. 매우 추운 날이였다. 학교에서 「장생탄광의 관계자는 곧바로 돌아가시오!」하는 방송이 있어 집으로 향했다. 도중에서 바다아래로부터 돌출하고 있는 탄광의 피야(환기구)주변 일대를 마치 나루토해협과 같은 매우 큰 소용돌이가 빙빙감고 있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큰일 났다」고 하여 사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 운수가 좋아 오빠는 그 날은 아침부터 맹장의 복통으로 일을 쉬었으므로 살아났다. 사고의 전날에는 갹내의 쥐가 일제히 밖으로 이동한다는 불길한 예고가 있었다. 그때문에 로동자는 모두 개내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건가!」하고 일본인 로무계가 목검을 가져 무두를 위협해 억지로 갹

내에 쓰아 버렸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로무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치마 아래에 도끼를 숨겨 가지고 찾아 동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장새의 모집계는 일본인의 앞잡이로 된 조선사람으로 그들은 직접 조선에 나가 로동자를 강제연행해 왔다.

사택은 해암그처에 이, 로, 하의 3동이 있어 강제연행조선인을 도망가지 않게 나무의 격자를 긴 사택에 수용되었다. 내가 옆을 지나갔을 때 그들은 격자의 사이로부터 손을 내여 무엇인가를 필사로 호소하지만 나는 그 때는 조선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무일도 해 주지 못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였다. 이것들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죄가이다.

[현재]

1992년 현지 유지 등에 의해 <장생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결성되고 발족이래 매년 사고발생의 2월 3일에는 유가족(<희생자 유족회>)을 초청하여 사고현자에서 조선식의 제사를 하고 있다.

탄광 해면에는 배기와 배수의 역할을 가진 피야가 지금도 2개 남아 그 아래에는 희생자의 시체가 계속 남아있다. 회에서는 추도비의 건립, 현존하는 피야의 보존 등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유고를 발굴하고 유가족들에게 반환하라!]

금년 1월 31일, 현지에서 추도식이 진행되어 유족회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고로부터 벌써 62년이 지나간데도 희생자의 유골이 지금도 발굴안된채 차거운 바다속 깊이에 잠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국제화를 표방하는 일본정부는 희생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를 하고 하루빨리 바다속의 유골을 발굴하고 유가족들에게 돌려야 할것이다.

그리고 장생탄광수몰사고의 사실과 희생자의 이름 등과 함께 과거의 조선식 민지지배에 대한 방성과 일본과 한반도의 평화와 우호를 바라는 문언을 새긴 추도비를 건립해야 할것이다.

長生炭鉱（山口県宇部市）に残された遺骨

山口県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金靜媛

●概略

1914年、山口県宇部市西岐波(現在)で創業した海底炭鉱。1940年には出炭高15万3千トン余り、鉱夫数958人を数える中堅炭鉱の一つ。

宇部市の炭田は海底に広がり、海岸線に沿った浅い地層にあり、宇部沖の10数キロにまで坑道が伸びていた。大小炭鉱が数十箇所あり、最盛期の生産量は年間400万トン、そのうち約80パーセントが海底からの採炭であった。炭層が浅い地層にあったため、各炭鉱では海底陥没、海水進入による水没事故が多発した。

長生炭鉱も浅い地層の採掘を強行していたため、1922年5月に水没事故が発生し、一時休業した。1933年に東宇部炭鉱株式会社(賴尊淵之助社長)長生炭鉱として再開し、42年2月3日再度、水没事故発生が発生する。

●強制連行

長生炭鉱には本格的な強制連行が始まる1939年以前から、朝鮮人鉱夫の占める割合が多く、地元では「朝鮮炭鉱」と呼ばれていた。

【募集】炭鉱には朝鮮総督府に勤務していたという朝鮮語に堪能な人物2人が募集係となり、直接朝鮮半島に募集に赴いていた。各面からの応募者に対し「約2年の契約期間が過ぎれば自由になり、その時には貯金もできている」などの甘言で説明をした。

資料によると39年10月、慶尚北道から249人をはじめ、42年の水没事故までに慶尚南道、忠清南道などから10数回に渡り、合計1258人が強制連行された。その間、多数の逃走者が出てたが、補充のためそれを上回る人数が強制連行された。

【抵抗】「1939年雇い入れた238名の朝鮮人労働者のうち17名の逃亡者があり警戒中にさらに二人の逃走せんとするのを労務係員が発見して事務所に連行殴打したところ、その報告を聞いた労働者が一斉に事務所に乱入し、ガラス窓、電話などを破壊するうち、労働者の間でも乱闘が生じ、その混乱に乗じてさらに24名が逃走したことがあったという」(『在日朝鮮人史研究』(第10号)

●強制労働

作業は船から石炭、物資の積み出し、荷卸し、ボタでの海岸埋め立て作業などの坑外労働と採炭、掘進など坑内労働に分かれていたが、水没事故など危険を伴う坑内作業はほとんど朝鮮人に強いられた。

朝鮮半島からの強制連行者と既住朝鮮人労働者の宿舎は別々であった。強制連行者は4棟の木造社宅に収容され、周囲には約3.6メートルの板塀で囲まれていた。外出は許可されず逃亡防止のため木格子がはめられた窓から手を伸ばして、通行人に窮状を訴えかける姿が目撃されている。賃金は戦時国債を買わされたり、強制貯金をさせられた。

●死者

1942年2月3日未明、坑口から約1キロ沖合の坑道で海水が進入し海底が陥没した。坑内で働いていた労働者の中には助かった人もいるが、183人の犠牲者を出した。この事故は、アジア太平洋戦争下において、最大の死亡者を出した大惨事であった。183人の内、約7割の133～135人が朝鮮人である。

事故直後、朝鮮人犠牲者の妻達の泣き叫ぶ「アイゴ」で騒擾状態に陥り、鎮圧のために憲兵や特高警察も出動したが、收拾がつかなかった。炭鉱経営者は騒動を鎮めるために、地元の西光寺の住職に依頼して急きよ、全員の位牌を一夜で作成し葬儀を行った。死亡者は位牌数との誤差があるが、大日本産業報告会編「殉職産業人名簿」に記載されている。

【目撃証言】金春粉氏(73歳、女性、飯塚市)聞き取り2003年3月

私は当時、小学校の6年生でした。とても寒い日のことでした。校内で「長生炭鉱の人は直ぐに帰りなさい」と言う放送があり、家路に向かいました。途中、海の下から突き出ている炭鉱のピーヤ(通気口)周辺一帯を、まるで鳴門海峡のような、とても大きな渦がグルグルと巻いていた光景が今も目に焼き付いています。

家(長生炭鉱社宅)に帰ると母が「大変なことになった」と事故について説明をしてくれました。運良く、坑夫の兄はその日は朝から盲腸の腹痛で仕事を休んだので命が助かりました。事故の前日には、坑内のネズミが一斉に外に移動するという不吉な前触れがありました。そのため労働者は皆、坑内に入らなかったのです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と、日本人労務係が木刀を持って、皆を脅し無理やり坑内に追いやりました。

事故で夫を亡くした朝鮮人のおばさんは怒りを押さえることができず「労務を捕まえて殺してやる」と言って、民族服のチマ(スカート)の下に斧を隠し持って探し回っていた姿を覚えています。

長生の募集係は日本人の手先にされた朝鮮人で彼らは直接、朝鮮に出向いて労働者を強制連行してき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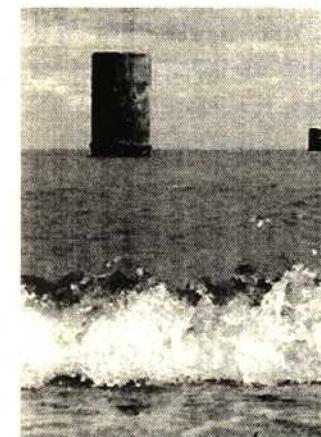
社宅は海岸近くにイ、ロ、ハの3棟があり、強制連行朝鮮人は逃げられないように木の格子がはめられた社宅に収容されていました。私がそばを通った時、彼らは格子の隙間から手を伸ばして、何かを必死に訴えかけるのですが、私はその時は朝鮮語が理解できず、何もしてあげられませでした。

本当に悲惨な状況でした。これらは全て日本帝国主義の罪科です。

●現在

1992年に地元有志らによって「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が結成され発足し、以来毎年事故発生の2月3日には、韓国から遺族(「犠牲者遺族会」)を招請し、事故現場で朝鮮式の祭祀が行われている。

炭鉱海面には排気と排水の役目を持ったピーヤーが今も2本残り、その下には犠牲者が今も引き上げられないまま眠っている。会では追悼碑の建立、現存するピーヤの保存などの運動を行っている。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변호사 최봉태

1. 문제의 제기

우리 남측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를 겪고 1965년 일본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맺어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하였다. 통상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과거사와 관련 일단락이 되어 이로 인해 일본과의 미래가 발목 잡혀서는 아니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미국, 그리고 남측에서 일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재판을 하고 있고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데모가 600회를 넘어 매주마다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과행에 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참배가 거듭되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매년 관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한 일본이 그 전범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데 주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남측정부가 일본과 1965년 관계정상화를 할 때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명확한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데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의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의 체결시 양국간에 제대로 된 협정을 맺지 못하였음과 아울러 협정 체결 후에도 편의적 해석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데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협정은 양국의 해석상 커다란 불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조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마저 성립당시부터 있어 왔다. 그러하기에 한일협정을 맺고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정상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갈등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발전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긴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소위 한일협정 중 법률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재조명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일협정의 한일간 근본적 불일치점

(1)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정부의 관할권 및 지위와 관련된 조항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III)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기본관계조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정부의 성격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확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국측은 이와 달리 해석을 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기본조약에서 인정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제48회 국회의회록 제2호, 국회사무처, 1965.2.27.). 아울러 이와 같은 일본의 기본조약 정신은 일본이 장래에 어떠한 외교관계나 그 외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한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을 들어 일본 국회에서 조차 그 약속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아울러 위 제3조의 해석에 대해서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이 없었던 것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북측과 일본의 수교전제로서 한일기본조약의 제3조와 관련되어 한일간에 아무런 수정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자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호(III)를 한국정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38선 이남으로 한정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위 결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가사 그렇게 해석된다 하더라도 위 기본조약 제3조의 문언 해석상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정부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그 하나의 근거로 위 결의를 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기본조약 제3조의 논의의 중심은 후미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한반도는 그 문언의 의미상 38선 이북을 제외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국제연합총회 결의를 38선 이남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면, 위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조약에 인용하여 그 효력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아가 이 경우에도 문언상으로 '총회의 결의 범위내에서만' 이라든가 후미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어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나 제한어구는 있지 아니하고 영어표현으로도 'as'라고 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한일협정체결당시에는 38선 이북의 강원도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총회결의에 의해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에 관해서도 한국정부가 한일협

정을 맺었다는 것인지, 맺지 않았다면 위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일본정부와 협상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일협정에는 한국정부의 지배권이 확장 혹은 축소될 경우를 예상한 일체의 수정조항 혹은 폐기조항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위 조항을 한반도 일부로 보았지 전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북일간의 수교과정에서 한일기본조약의 위 조항의 수정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일기본조약에 수정 혹은 폐기조항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향후 남북이 통일된 후 성립될 정부와 현재의 한일협정 혹은 진행중인 북일협정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평양에서 발표된 '조일평양선언'에 의하면 한일기본조약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일기본조약에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문언이 있지 아니하나 위 선언에는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지 배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고 하여 일본측 학자로부터 이는 한일기본조약의 입장을 사실상 방기하였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준의 한일협정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통일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한일협정당시의 교섭의 근거로 흔히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국제규범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위 강화조약의 서명국도 아닌데다가 북측 역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질서내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북일간의 교섭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도 아울러 문제이고,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조항

한일협정체결시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북일간의 국교교섭에서 가장 양 당사자간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역사인식 부분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는 바 이 조항의 무효시점과 관련하여 한일양국 정부간의 주장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주장처럼 구 조약들이 체결당시 유효하였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 무효 혹은 실효의 시점이 문

제가 된다.

일본정부는 주로 1948.8.15. 한국정부가 성립이 된 때로부터 구 조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북측정권의 경우 1948.9.9. 성립이 되었음을 고려해 보면 구 조약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48.8.15. 을 기점으로 하여, 북측과의 관계에서는 1948.9.9.을 기점으로 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것인지, 하나의 구 조약이 지역에 따라 분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인해 구 조약이 무효로 된다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이전인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의 국제법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제강점 하 통치기간동안 일본국적을 소지한 일본국민의 국적문제, 즉 일본 국적법에 의해 당시 한국 및 북측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일본국적이 합법적으로 이탈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일본국적법에는 사실상의 국적이탈을 인정하는 어떤 조항도 있지 아니 하므로 국적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 국적이탈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일본에 거류하는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발효일을 그 국적상실의 기준으로 보나 우선 일본국적법과의 정합성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한반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본국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한국전쟁은 일본국민간의 내전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이중국적 상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 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구 조약들의 무효와 관련하여 체결당시에는 유효하였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측의 구 조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1919년 삼일운동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 바, 헌법의 가치체계하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정부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맺은 조약이 되어이는 결국 위헌이 조약이 되어 우리 헌법 질서상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조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위헌이후의 한일협정은 재체결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청구권주장금지조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3

항의 청구권주장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오고 있고 각 정부조차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야말로 임시용변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용변적인 자의적 해석은 주로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원폭피해자등 자국민의 미국정부에 대한 보호의무 및 포기된 재외 일본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협정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왔고 이것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거듭 확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소멸된 것은 정부의 외교보호권 뿐이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주장이 법정 혹은 언론을 통해 일관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도 소멸시켰다고 종종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하면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일 양국정부는 이를 모두 회피하여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들이 공개되어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서의 공개가 북일간의 교섭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문서공개를 하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한 한국정부는 결국 한국의 일제피해자들로부터 피소가 된 상황이다.

외교적 경로 및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위 조항이 ① 외교 보호권만의 포기인지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 ② 재일동포, 사할린거주 피해자, 우키시마호 피해자, 정신대 피해자 등의 피해 유형에 대한 적용부분에 대해 양국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해결방향

(1) 핵심적 고려요소

한일간의 과거사청산 및 기본관계설정은 국제법과 조리에 맞아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과거사로 인하여 한일간의 미래가 발목 잡혀서는 아니 된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한일협정이 남북분단으로 인한 전쟁 후 냉전상황을 이용한 것임을

한일양정부가 특히 일본이 이용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북일간의 교섭이 진행되는 이상 수정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제 강점기의 구 조약이 당초에는 유효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주장할 경우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한일양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청구권주장금지조항의 취지에 대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양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외교보호권의 포기 혹은 실체적 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 고 그에 따른 대상조치를 헌법질서에 맞게 취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범위에서 누락된 피해에 대해 추가 협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대해 금전적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어떤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어떤 범위의 피해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일본에게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禁反言의 原則(estoppel)에 의해 -법적 책임 인정 및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관련 외교보호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4년 2월 한국 국회에서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었는바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정부 역시 자료의 공개가 금전적 보상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국회등에서 거듭되는 개인의 실체적 권리 인정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한국 정부 혹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대해 응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오로지 이에 대해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령과 건강등 피해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인도적이며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간의 최종적 타결을 선언한 1960년 보상조약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 1981년 재차 협정을 '독불이해증진재단에 관한 출연협정'이란 이름으로 만든 사실도 선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기업의 책임해제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